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



이태규 외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활력 제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성장견인을 위한 세제개혁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

연구진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성장동력실 연구위원, 총괄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성장동력실장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성장동력실 연구위원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성장동력실 연구위원

정희상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노동시장연구 TF팀 부연구위원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활력 제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성장건인을 위한 세제개혁

목차

요약	007
----------	-----

서론

01. 한국경제의 도전과 국회의 역할	010
02. 제20대 국회 부문별 정책과제	016

정책과제

0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활력 제고	020
(1) 융복합·신산업기술 시장진입 활성화 특별법 제정	021
(2)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022
(3) 인터넷전문은행 진입활성화	023
(4)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024
(5) 원격의료 도입	025
(6)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026
(7)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027
(8) 게임산업 규제완화	028
(9) 여신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방식 개선	029
(10) 공공 SI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규제 개선	030
(11)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등에 대한 사전신고의무 개선	032
(12) 도서정가제 폐지	033
(13) 외국인 의료기관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완화	034
(14)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및 판매처 확대	035
(1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처리	036
(16) 면세점 매장 수 및 특허기간 제한 완화	037
(17)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038
(18)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개선	039
(19)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폐지	040
(20)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	041
(21) 사업조정제도의 폐지	042
(22)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폐지	043
(23) 전기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044

0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046

(1)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유한책임회사 규제개선	047
(2)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048
(3)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서 첨부 의무화	049
(4) 상장사 합병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폐지	050
(5) 주주총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051
(6) 경영권 안정화·방어제도 도입	052
(7)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배임죄 개선	053
(8)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054
(9)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055
(10) 효율적 기업결합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성 법률요건 폐지	056
(11) 일반지주회사의 용이한 구조조정을 위한 소유지분 규제개선	057
(12) 일반지주회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채비율 규제개선	058
(13) 일반지주회사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손·증손기업의 투자지분 제한 개선	059
(14)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060
(15)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순환출자규제 완화	061
(16) 경영권보장을 위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완화	062
(17)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거래 규제 완화	063
(18) 하도급법 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064
(19)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한 효율적 경쟁의 허용	065
(20) 조사 시 피조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066
(21) 배출권 거래제 규제대상 합리화	067
(22)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폐지	068
(2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조건 개선	069
(24)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운용 개선	070
(25) 재활용 실적 인정 기준 개선	071
(2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 환경규제 개선	072
(27) 보육정책 개선방안	073
(28) 여성 근로 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개선	074
(29) 무상급식 개선방안	075
(30) 대학구조개혁 개선방안	076
(31)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제도개선	077
(32) 교육시장 개방 제도개선	078
(33) 수도권 공장입지·설립규제 완화	079

0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080

- (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 허용업종 확대 081
- (2) 통상임금 범위의 명확화 082
-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개정 083
- (4) 경영상해고 요건 명확화 084
- (5)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 085
- (6)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086
- (7)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면제제도 087
- (8)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088
- (9) 쟁위행위 시 직장검거 장소 명확화 089
- (10)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합중 기준 완화 090

04. 성장견인을 위한 세제개혁 092

- (1) 법인세율 인하 093
- (2) R&D 세제지원 강화 094
- (3)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도입 095
-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096
- (5)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097
- (6) 소득세제 개혁 098
- (7) 상속·증여세제 개혁 099
- (8) 일감몰아주기과세 개선 100
- (9)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101
- (10) 재정준칙 강화 102
- (11)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103

참고문헌 104

요약

수년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

- ▶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이 같은 추세를 따를 경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급속히 추락할 전망
- ▶ 특히 저성장은 일자리부족을 심화시켜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

이와 같은 경제전반의 침체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특히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임.

- ▶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조성이 중요
- ▶ 제도적 여건의 확보는 입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완성되므로 국회는 입법적 지원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

따라서 성장동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국회의 정책과제를 제시

- ▶ 경제재도약의 전기(轉機)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의 단순한 기능적 보완으로는 역부족이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의 정책전환이 필요
- ▶ 산업활력 제고, 제도개혁, 노동개혁, 세재개혁의 4개 부문, 77개 정책과제를 제시

20대 국회 정책과제의 개요

경제재도약을 위한 20대 국회 정책과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활력 제고

- ▶ 융복합·신산업기술 시장진입 활성화 특별법 제정
-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 인터넷전문은행 진입활성화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 ▶ 창업활성화를 위한 유한책임회사 규제개선
- ▶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서 첨부 의무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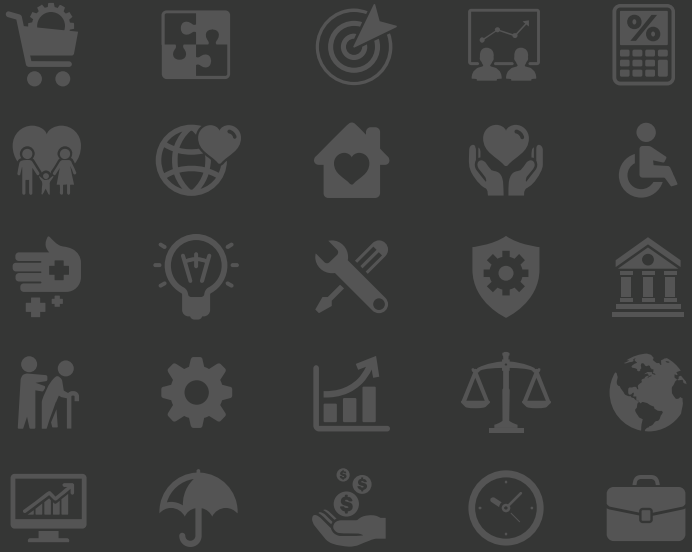
-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 허용업종 확대
- ▶ 통상임금 범위의 명확화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개정

⋮

성장견인을 위한 세제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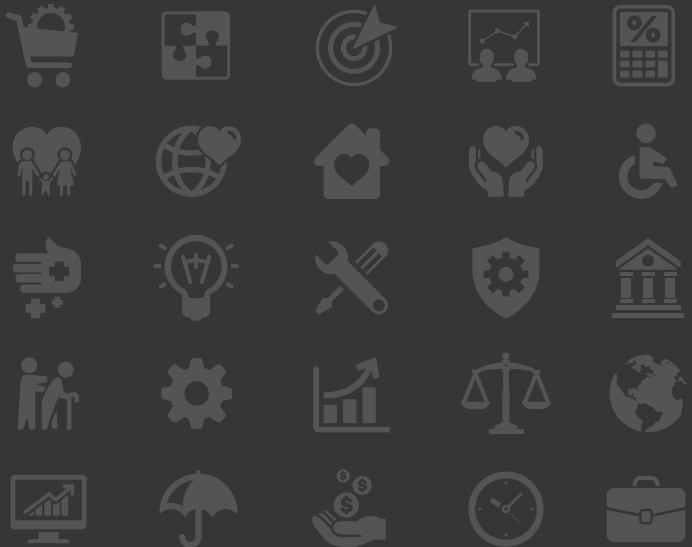
- ▶ 법인세율 인하
- ▶ R&D 세제지원 강화
- ▶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도입

⋮



I. 서론

- 01. 한국경제의 도전과 국회의 역할
- 02. 제20대 국회 부문별 정책과제



01. 한국경제의 도전과 국회의 역할

▣ 수년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

- 2015년 실질 GDP성장률은 2.6%이며 이 경우 2012년 이후 4년간 평균 성장률은 약 2.8%에 불과
-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이 같은 추세를 따를 경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급속히 추락할 전망
 - OECD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는 가장 빠른 편
 - OECD 평균 잠재성장률: 2.06%(2015) → 2.32%(2020) → 2.30%(2025)
 - 한국 잠재성장률: 3.66%(2015) → 3.15%(2020) → 2.64%(2025)

그림 1 실질GDP 성장률과 추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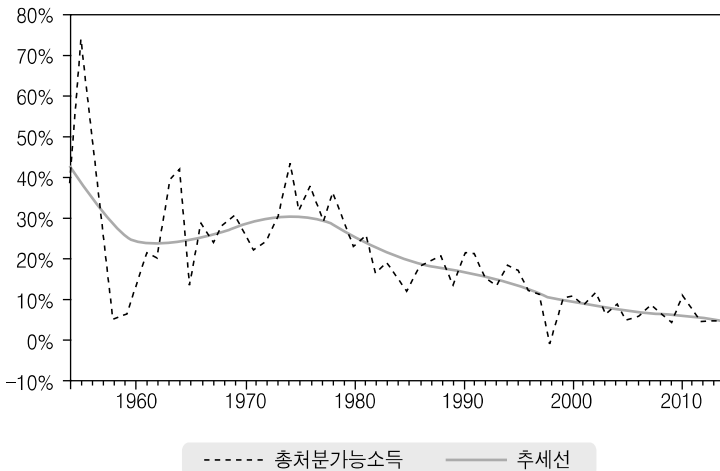
■ 성장률 하락에 따라 가처분소득증가율도 하락하여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

- 최근 3년간(2012~2014) 총처분가능소득증가율은 3%대 중후반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0~2011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7.35%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 향후 성장여력을 가늠케 하는 투자 관련 지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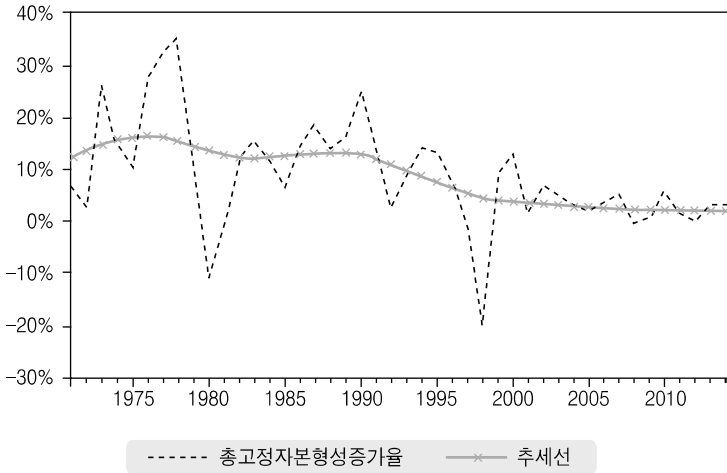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그해 -0.9%의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014년까지 평균 증가율은 1.66%에 그침.
- 반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은 4.95%로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의 증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국내 총투자율(국내총자본형성/국민총처분가능소득)도 1991년 41.4% 정점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29%를 기록

그림 2 총처분가능소득증가율과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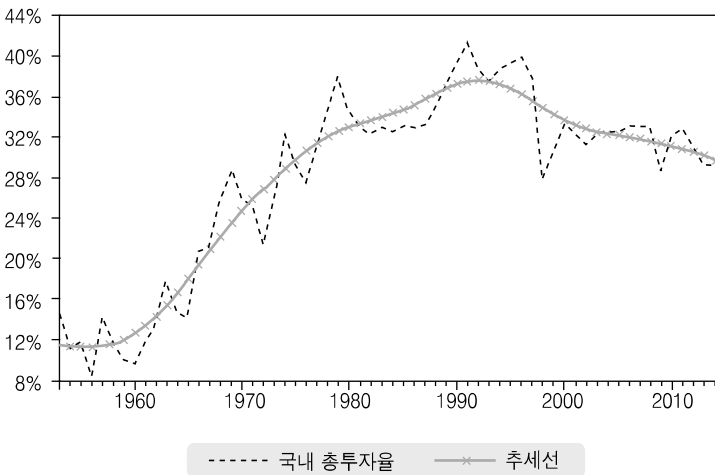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과 추세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국내 총투자율과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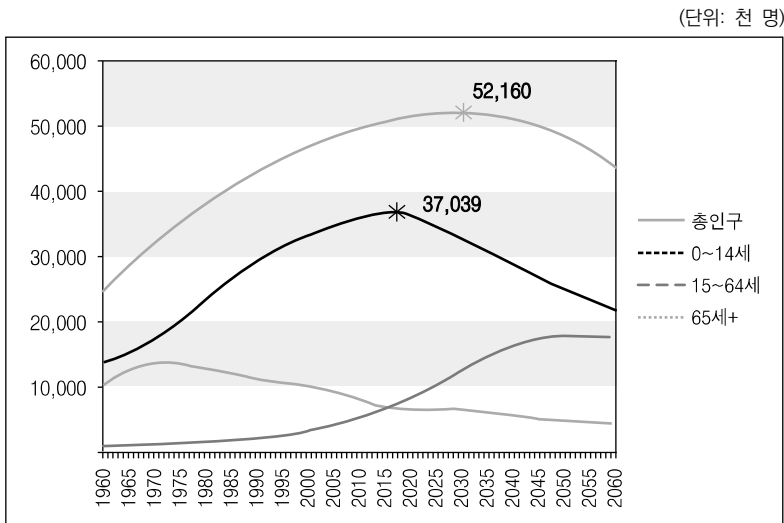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급선무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39천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2060년에는 2,1865천명(인구의 49.7%)까지 감소할 전망
 - 총인구는 2030년 52,160천명까지 증가 후 감소하여 2060년 43,959천명 수준 전망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를 상쇄하고 증가하는 노령인구부양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하락추세를 역전시켜야 함.

그림 5 연령별 인구 1960-2060



자료: 장래인구추계 2010-2060, 통계청(2011)

■ 이와 같은 경제전반의 침체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특히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임.

- 민간은 민간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현재의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또한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
- 결국 제도적 여건은 입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완성되므로 국회는 입법적 지원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도모하는 노력을 해야 함.

■ 하지만 19대 국회는 개원 초기부터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를 주요 현안으로 다룸에 따라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입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 우선 2012년 4월 19대 총선과 그해 12월 대선에서의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었으므로 19대 국회 개원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게다가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인해 쟁점법안에 대해 다수결에 의한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되어 경제에 대한 정책적 시각이 다른 경우 입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모색이 어렵게 되었음.

■ 한편 성장침체를 극복하고자 입안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19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어 신속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특히 경제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입법추진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초래
 - 한 연구¹⁾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의 경우 이전 국회에 비해 법안 가결율이 감소하고 그 처리기간도 증가하는 비효율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함.

1) 이한수, 제19대 국회 평가: 국회선진화법과 입법 활동, 의정연구 제20권 제2호, 2014

▣ 향후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으므로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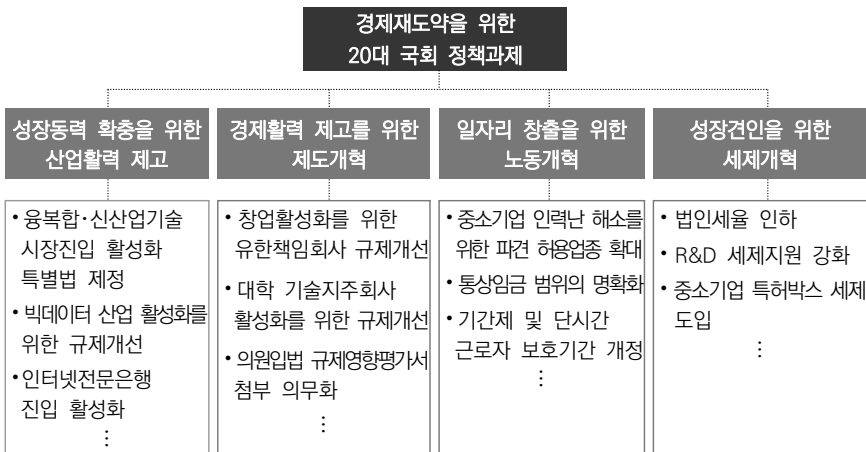
▣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고 경제재도약의 전기(轉機)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의 단순한 기능적 보완으로는 역부족이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의 정책전환이 필요

- 성장친화적 정책도입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이 필요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회의 주요 위원회별로 추진해야 할 향후 정책과제와 그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함으로써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20대 국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성장동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국회의 정책과제를 산업활력 제고, 제도개혁, 노동개혁, 세재개혁의 4개 부문에서 77개의 정책과제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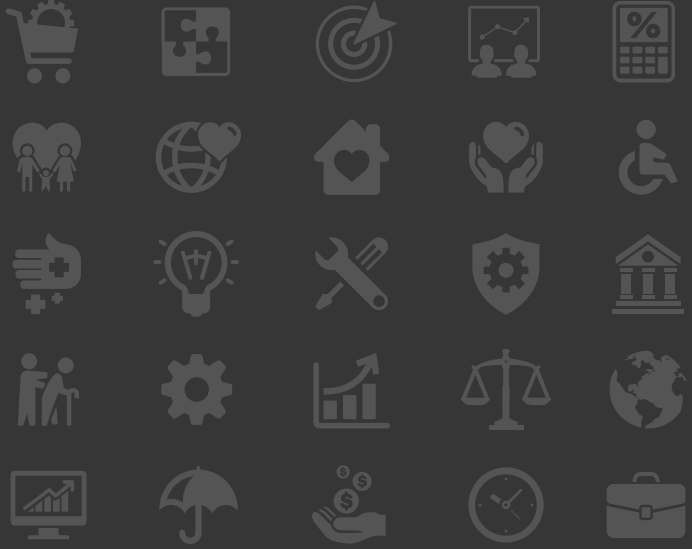
그림 6 20대 국회 정책과제의 개요



02. 제20대 국회 부문별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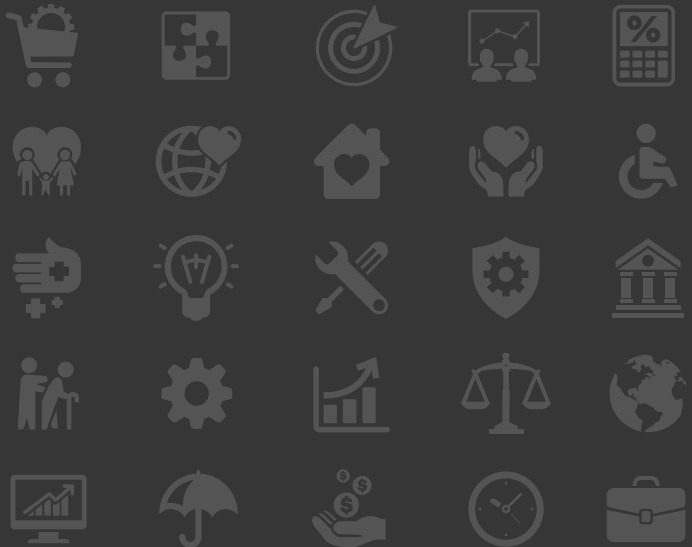
부문	정책과제	소관위원회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활력 제고	융복합·신산업기술 시장진입 활성화 특별법 제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안전행정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진입활성화	정무위원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보건복지위원회
	원격의료 도입	보건복지위원회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 규제완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신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방식 개선	국회운영위원회
	공공 SI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규제 개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등에 대한 사전신고의무 개선	정무위원회
	도서정가제 폐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국인 의료기관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완화	보건복지위원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및 판매처 확대	보건복지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처리	기획재정위원회
	면세점 매장 수 및 특허기간 제한 완화	기획재정위원회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개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폐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사업조정제도의 폐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폐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기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유한책임회사 규제개선	법제위원회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서 첨부 의무화	국회운영위원회
	상장사 합병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폐지	법제위원회
	주주총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법제위원회
	경영권 안정화·방어제도 도입	법제위원회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배임죄 개선	법제위원회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정무위원회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정무위원회
	효율적 기업결합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성 법률요건 폐지	정무위원회
	일반지주회사의 용이한 구조조정을 위한 소유지분 규제개선	정무위원회
	일반지주회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채비율 규제개선	정무위원회
	일반지주회사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손·증손기업의 투자지분 제한 개선	정무위원회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허용	정무위원회

부문	정책과제	소관위원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순환출자규제 완화	정무위원회
	경영권 보장을 위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완화	정무위원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거래 규제완화	정무위원회
	하도급법 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정무위원회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한 효율적 경쟁의 허용	정무위원회
	조사 시 피조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정무위원회
	배출권 거래제 규제대상 합리화	정무위원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폐지	정무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조건 개선	정무위원회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운용 개선	환경노동위원회
	재활용 실적 인정 기준 개선	환경노동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 환경규제 개선	환경노동위원회
	보육정책 개선방안	보건복지위원회
	여성 근로 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개선	보건복지위원회
	무상급식 개선방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구조개혁 개선방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시장 개방 제도개선	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 공장입지·설립규제 완화	국토교통위원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 허용업종 확대	환경노동위원회
	통상임금 범위의 명확화	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개정	환경노동위원회
	경영상해고 요건 명확화	환경노동위원회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	환경노동위원회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환경노동위원회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면제제도	환경노동위원회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환경노동위원회
쟁취행위 시 직장검거 장소 명확화	환경노동위원회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할증 기준 완화	환경노동위원회	
성장견인을 위한 세제개혁	법인세율 인하	기획재정위원회
	R&D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도입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기획재정위원회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제 개혁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증여세제 개혁	기획재정위원회
	일감몰아주기과세 개선	기획재정위원회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강화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안전행정위원회	



II. 정책과제

0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활력 제고
0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0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04. 성장견인을 위한 세제개혁





0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활력 제고

1. 융복합·신산업기술 시장진입 활성화 특별법 제정
2.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3. 인터넷전문은행 진입활성화
4.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5. 원격의료 도입
6.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7.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8. 게임산업 규제완화
9. 여신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방식 개선
10. 공공 SI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규제 개선
11.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등에 대한 사전신고의무 개선
12. 도서정가제 폐지
13. 외국인 의료기관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완화
14.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및 판매처 확대
1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처리
16. 면세점 매장 수 및 특허기간 제한 완화
17.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18.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개선
19.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폐지
20.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
21. 사업조정제도의 폐지
22.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폐지
23. 전기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1. 융복합·신산업기술 시장진입 활성화 특별법 제정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특별법 제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신산업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이 칸막이 식으로 구획된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는 어려워 이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제품출시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을 활용한 융합기술이 규제 장벽으로 사업화에 실패한 사례 속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항공기 드론은 관련부처의 운송허가, 전파허가, 사전운항허가 등의 복잡한 규제로 중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김 • 벤처기업이 세계 최초로 인공심장 개발과 인체이식에 성공했으나 규제로 문을 닫은 반면, 미국 후발 기업의 가치는 대폭 상승 - 규제로 인해 신산업 창출을 통한 성장과 고용확대 기회 박탈 ○ 일본에서는 신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쟁력 강화법'에서 '그레이존 해소제도(규제대상여부 사전확인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기업단위의 규제특례제도)' 도입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융합시장은 '08년 8.6조 달러에서 '18년 68조 달러로 확대 예상 ○ 우리나라에서 융합 및 신기술 제품의 시장출시를 어렵게 하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기준 미비로 시장출시 자체가 봉쇄 - 규제 법령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투자 자체를 포기 - 새로운 기술 및 제품 등에 맞는 법령이 없거나 미흡하여 시장출시 포기 -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를 위한 시범사업 어려움 ○ 현행 융합 및 신기술 관련 법체계만으로는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이원적 법체계의 한계 - 국회에 발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 개혁 특별법' 등은 융합 기술의 시장출시를 부분적으로만 지원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제품의 출시부터 시장진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부처와 관련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인증·검사 등 인허가 체계구축 - 규제 등의 명확화와 적절한 특례 인정 및 필요한 시범사업 실시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규제를 일괄 심사하여 모두 개선하는 네거티브방식 심사제 도입 •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시범사업 등 허용 ○ 특별법 제정에 힘입어 ICT 융합프로젝트 14.2조 원(무역투자진흥회 '16.2.17)의 성공적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5년간 124,960명의 고용 창출

2.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안전행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하여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4조·제24조의2, 위치정보법 제15조·제21조에서 정보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이용 및 제공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인 정보가 비식별화된 경우' 정보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예외 인정 ○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보다는 오히려 '보호'에 관심이 집중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산업은 '21세기 원유'라 불리우며 IT·금융·유통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신성장동력으로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2011년부터 강조되었으나 더디게 진전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동력의 IT 융합산업을 추진하는 데 정보 수집과 활용이 필수이지만 현재 정보의 활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개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에서 추출되는 산업적 가치인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가 제공되는 시점에서 '고지와 동의'를 요구하는 현재의 사전적 규제 시스템이 빅데이터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큼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한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후거부방식 도입 <p><개인정보보호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현행과 동일)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좌동)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경우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현행과 동일)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좌동)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경우
현행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3. (현행과 동일)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좌동)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경우				

3. 인터넷전문은행 진입활성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은행법

- 현황**
- 2014년 2월 이후 산업자본(비은행주력자)이 은행 의결권 주식을 소유할 경우 4% 이내로 제한되도록 소유지분 제한(은행법 제16조의2)
 -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의결권 주식의 50%로 제한을 완화시키도록 법개정 중에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현재 카카오뱅크(다음카카오)와 K-뱅크(KT)가 허가받은 상황

- 평가**
- 외국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자본(비은행주력자)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여 높은 성과를 기록
 - 외국의 산업자본기업인 미국 GM, 일본 소니, 독일 폭스바겐은 손자회사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고 경영 중
 - 미국 GM의 손자회사인 앨리(Ally)뱅크는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한 미국 내 2위 인터넷전문은행
 - 일본 소니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창출 4년 연속 1위 기업
 - 상출제기업집단 비참여로 인한 규제비용은 최소 1,312억 원, 최대 4,721억 원
 -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비용은 5,246억 원(KDI 2015)으로 집계됐는데, 여기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익률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계산
 - 카카오와 KT의 수익률 평균은 4대그룹 상장사 평균 대비 10% 수준(2014)
 - 상장회사 수익률 평균은 3대그룹 계열사 평균 대비 75% 수준(201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소유 지분을 50%로 확대하도록 개정

〈은행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제한 등) ①·② (생략)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② (좌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③ ----- -----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설〉	4.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보건복지위원회/의료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3조에 의해 의사와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 추구 행위가 금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의료법인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출자한 사람은 출자금을 회수해 갈 수 없고, 개인상속하거나 지분을 임의 처분·폐업할 수 없으며 공익적 목적의 투자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병원들이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없어 민간부문 투자가 부진한 상황 - 자금조달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금융기관(장·단기 차입금)에 의존하여 타인자본비율이 높은 상황 ○ 미국이나 공공의료가 강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규모는 GDP 대비 5.1%(2012년)로 낮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2.3%, 프랑스 7.9%, 독일 7.8%, 캐나다 7.4%(2011년), 일본 7.3%(2011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국내외 영리법인이 국내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도 직접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한다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비보험 매출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이나 R&D 중심 병원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진료과목 수거나 국민들의 공공의료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 - 그러나 의료의 공공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은 제한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등 입법적 고려가 필요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의료보험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p>〈의료법〉</p> <table border="1"> <thead> <tr> <th>현행</th> <th>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생략) 1~3. (생략)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생략)</td> <td>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 5.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분석결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고용창출효과는 10,481~37,939명으로 추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2009)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생략) 1~3. (생략)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생략)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생략) 1~3. (생략)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생략)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 5. (현행과 같음)				

5. 원격의료 도입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보건복지위원회/의료법

현황

- 현행 의료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

평가

- 201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3.2명) 중 터키(1.8명), 칠레(1.9명)에 이어 멕시코·폴란드와 함께 세 번째로 적음
- 간호사 수도 인구 1,000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 9.1명보다 많이 적음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역 다수 존재
-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격의료 시장규모는 APEC 국가 중 하위권
- APEC 원격의료시장 외형은 16조 원에 달하며, 이 중 국내 점유율은 5% 이하로 필리핀·인도네시아와 큰 차이가 없음
- 선진국에서는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와 관련,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 수정안 전면 수용

〈보건복지부 입법 예고안〉

구분	입법 예고안
① 원격의료 전문기관 제한	■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 금지, 위반 시 형사벌칙
② 대면진료 원칙	■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 시 주기적인 대면진료 필요
③ 초진제한	■ 원격 진단·처방은 경증질환에 한정 ■ 노인·장애인은 대면진료로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④ 이용 대상자	■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 도서·벽지 주민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군·교도소 ■ 수술·퇴원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육상 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⑤ 시범사업 및 시행시기	■ 시범사업 근거 규정 ■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u-Healthcare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20%일 경우 최소 30,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건강관리서비스 및 u-Healthcare 시장 규모 추계(2009)

6.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관광진흥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12월 3일,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을 지을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학교 출입문 50m 이내에서 75m 이내로 확대하 되, 상대정화구역 내 일정 조건 충족할 경우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호텔 건립 가능(관광 진흥법 제16조제7항) - 심의 면제 조건으로 유해시설이 없을 것과 객실 100실 이상 등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개 이상의 호텔 객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고 8천억 원 투자 효과와 1만 6,500명 고용 창출을 예상 ○ 그러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 지역을 서울·경기로 한정하고, 법 적용 시한도 5년 일몰법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에는 모든 지역에서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의 허용이 추진되었으나 본회의에는 지역제한적인 수정안이 상정 ○ 부산, 세종 신도시와 같은 지역에서도 호텔 건립은 절실하고, 5년 일몰기간 지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장애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관광진흥법을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법 적용 지역을 부산이나 세종 신도시와 같이 호텔 건립이 절박한 지역도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 <p><관광진흥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 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4~5. (생략)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 허가 의제 등) ⑦ (현행과 같음)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양질의 숙박시설을 지속적이고 적절하 게 공급하기 위해 5년 일몰기간도 폐지 ○ 개정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경우 8,200명의 추가 고용 창출 가능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 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4~5. (생략)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 허가 의제 등)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 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4~5. (생략)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 허가 의제 등) ⑦ (현행과 같음)				

7.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10월 한국형 명품 산악관광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자연 친화적인 관광휴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산악관광법 제정안 제4조에서 자연공원이 제외됨에 따라 산악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등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이 불가능 ○ 산악관광 관련 사업안의 재무타당성 분석 결과 산악관광의 사업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김혁수,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하자본 회수기간(PPM): 약 1.5년, 회계적이익율(ARR): 116%, 내부수익률(IRR): 105.4%, 순현재가치(NPV): 약 12억 원 - 산악관광 사업 중 전통한옥과 한의 관련 일자리만 약 25,000개 창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산악관광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 산악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는 자연공원 등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산악관광법에 반영 <p>〈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p> <table border="1" data-bbox="229 899 1020 1263"> <thead> <tr> <th data-bbox="229 899 823 933">현행</th> <th data-bbox="827 899 1020 933">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29 933 823 1263">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핵심구역 3.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9.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td> <td data-bbox="827 933 1020 1263">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8. (현행과 같음) 9. 삭제 10. (현행과 같음)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연구원은 1인당 산지관광 지출액이 일반여행 수준으로 증가하고 10% 관광객 증가 시, 180,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추산(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의 산악지대는 12,450km²로 강원도 산지(13,680km²)보다 좁지만, 설악산과 해발고도가 1,700m로 비슷한 스위스 리기산에서는 1박 2일 기준으로 관광객들이 1인당 평균 519,000원을 쓰는 반면, 설악산 방문객 1인당 지출액은 32,000원에 불과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핵심구역 3.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9.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8. (현행과 같음) 9. 삭제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핵심구역 3.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9.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8. (현행과 같음) 9. 삭제 10. (현행과 같음) 				

8. 게임산업 규제완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청소년 보호법

- 전망
-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을 목적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섯다운제' 도입(청소년 보호법 제26조)
 - 게임산업은 종사자 1인 이상 9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97%(2012년 기준)를 차지

- 평가
-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게임수익 4위(2015년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산업 강국으로, 게임은 콘텐츠산업 수출의 55%(2014년 기준)를 차지
 - 2011년 규제강화 이후, 게임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사업체 수: 2012년 16,189개 → 2013년 15,078개 → 2014년 14,440개
 - 종사자 수: 2012년 95,051명 → 2013년 91,893명 → 2014년 87,281명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2015)
 - '섯다운제'는 태국과 중국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된 규제
 - 또 다른 게임산업 규제인 웹보드게임 규제는 월 결제 한도를 30만 원, 1회 베틱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액 10만 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써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
 - 미국, 유럽, 일본 등 게임선진국은 민간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게임을 관리, 게임산업을 예술·문화 또는 창조산업으로 보고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

- 개선방안
- 게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조적 문화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게임규제정책을 개선
 - 게임 관련 문제를 양육의 문제로 인식하고 강제적 섯다운 제도 폐지

<청소년 보호법>

현행	개정안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삭제

- 사행물로 인식하는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도 폐지
 - 웹보드게임을 부가가치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산업으로 인식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2] 8. 가~마 삭제
-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면 규제 이전인 2010년의 고용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약 7,7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
 - 게임산업은 29세 이하 고용비율이 33%인 대표적인 청년고용 산업

9. 여신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방식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국회운영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현 황	<p>○ 여신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는 현재 포지티브 방식 유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p> <p>- 현행 부수업무는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에 한정</p>														
평 가	<p>○ 타 금융업권의 부수업무 범위는 이미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시행* 중에 있어 국내 금융산업 간 불균형 초래</p> <p>* 금융투자('09.2.4), 은행('10.11.18), 보험('11.1.24)</p> <p>○ 여신금융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체 수익모델 필요</p> <p>- 신용카드업의 주요 수익기반인 가맹점수수료 수입 감소와 은행의 카드분사, 이동통신사의 시장진입 등으로 경쟁심화</p> <p>- 신규가맹점수수료체계 적용으로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 확대 적용 및 중소형가맹점 수수료 인하</p> <p>• 업계 전체 약 9,000억 원 수익 감소 예상</p>														
개 선 방 안	<p>○ 부수업무 네거티브제 도입</p> <p>- 부수업무는 '고유·겸영업무 외의 기타업무'로 규정하여, 제한을 두지 않되, 여신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고객의 권익보호에 지장 초래 또는 금융시장 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p> <p><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td> <td>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외에 관련 법령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업무 또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에 속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td> </tr> <tr> <td>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td> <td>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td> </tr> <tr> <td>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回收) 업무</td> <td>③ 그 밖에 업무의 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td> </tr> <tr> <td>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td> <td>제46조의2(부수업무의 영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td> </tr> <tr> <td>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td> <td>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td> </tr> <tr> <td>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td> <td>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외에 관련 법령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업무 또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에 속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回收) 업무	③ 그 밖에 업무의 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제46조의2(부수업무의 영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외에 관련 법령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업무 또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에 속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를 포함한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의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2.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을 포함한다)의 양수·관리·회수(回收) 업무	③ 그 밖에 업무의 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대출(어음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제46조의2(부수업무의 영위)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p>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p> <p>7.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p>	<p>2. 고객의 권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p> <p>3.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p> <p>③ 제2항에 의한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부수업무의 영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10. 공공 SI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규제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p>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보호 위해 대기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 SI 사업에 참여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는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 일부라도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사업이라면 제한(법 제2조) ○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시장 규모는 줄었고 중소기업 성장을 오히려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발주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한 중소 IT기업은 전체의 5.5%에 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60%는 외국계를 포함한 상위업체가 수주 • 국내 대기업들은 전자정부시스템 등을 수출할 때 필요한 한국정부와의 사업수행실적이 없어 저개발 국가들의 전자정부사업 입찰에 참여조차 못함 ○ 지난해 12월, 33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 예정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이 대기업 진입규제로 부실화 우려 제기
<p>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동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공공 SI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경영정보학회)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되어 발주되어야 하는 IT융복합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현행	개정안
<p>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2. (생략)</p> <p>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p>	<p>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p> <p>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및 시설 또는 장치와 분리하여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 시설 또는 장치의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p>
<p>- '전자정부사업'은 대기업 참여제한에서 제외</p>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p>

1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업무 등에 대한 사전신고의무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황

- 금융투자업자가 경영업무, 부수업무, 업무위탁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 개별 금융시장 법률체계에서는 사후 신고사항이었으나, 포괄주의 규율방식인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사전 신고사항으로 전환

평가

- 사전신고 前 금융당국과 비공식 접촉·협의과정에서 당국의 판단 유보 등으로 업무시행일을 확정하지 못해 신속한 업무 영위에 어려움이 있음
 - 자본시장법에 경영·위탁·부수업무 등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사후시정도 가능하므로 종전과 같이 사후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경영업무는 전부 열거되어 있고, 업무위탁도 금지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부수업무에 대해서도 당국이 사후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업무영위 범위〉

구분	근거조항	주요내용
경영업무	법 §40 시행령 §43	국가·공공단체업무 대리, 보험대리점·중개사업무, 투자자에탁금 자금이체업무 등 경영 가능
위탁업무	시행령 §45	본질적 업무의 위탁금지(투자매매업의 경우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 체결과 해지, 증권 인수업무, 인수증권의 가치분석 등)
부수업무	법 §4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 가능 ①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저해 ② 투자자보호에 지장 초래 ③ 금융시장의 안정성 저해)

애로사례

- A선물사가 선물계좌개설(실명확인대행)을 위탁하여 B증권사가 부수업무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B증권사 직원의 선물상품 가입권유를 우려한 금감원의 신중한 판단으로 업무개시일이 지연된 바 있음

- 업무위탁에 따르는 부수업무 또한 업무의 범위가 수탁받은 업무로 사실상 한정되므로 사후 보고로 전환할 수 있음
- 이외의 부수업무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후에도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므로 사후보고로 전환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임

개선방안

-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업무, 부수업무, 업무위탁 등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신고로 전환

12. 도서정가제 폐지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출판문화산업진흥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점이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도서를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서정가제라고 하는데, 실제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서점들의 가격할인을 제한하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는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따라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그 개정안을 통해 할인율과 적용대상 등의 세부규칙이 개정 ○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에 의하면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도서를 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에 간접할인(사은품, 포인트 적립 등) 5%를 포함하여 최대 15%까지만 할인(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는 출간된 지 18개월이 안 된 도서에 대해서는 최대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으며, 18개월이 지난 도서(구간)와 실용서, 학습참고서, 도서관·공공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판매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매겨 판매할 수 있었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상반기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17,000원대로 작년 대비 10% 하락(컨슈머워치, 2015.11.12) ○ 도서정가제는 재고처리를 어렵게 하여 출판 위험을 증가시키고, 무명작가나 신인작가들의 출판 기회를 감소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북스, 민음사, 창비, 김영사 등 주요 출판사 매출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21~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한국경제, 2016.4.22) - 큰 폭의 할인을 못 하게 된 구간의 판매 급감이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 ○ 개정 도서정가제로 인해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ebook을 통해 다양한 가격제도 시행 ○ 도서정가제가 보호하려는 중소서점의 퇴장은 도서 할인경쟁이 아니더라도 진행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도서가격 할인율과 적용대상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자들의 후생증대와 출판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으로 규정하는 도서정가제를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단 구간, 실용서, 학습참고서, 도서관·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도서 등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매겨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 기능의 이유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면 출판사와 서점들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도입되도록 해야 함 <p>〈출판문화산업진흥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th> <th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td> <td></td> <td>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td> </tr> <tr> <td>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td> <td></td> <td>④ 삭제</td> </tr> <tr> <td>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td> <td></td> <td>⑤ 삭제</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미국, 영국 등 20개국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프랑스, 독일 등 14개국은 이를 시행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삭제
	현행	개정안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삭제											

13. 외국인 의료기관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완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보건복지위원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되, 설립자는 외국인만 가능하고 건강보험적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외국의료기관 설립 시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외국인 의사 비율 10% 이상, 병원장 및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의무화 - 내과, 신경과, 외과 등 16개과에 대해 1명 이상의 외국인 의사 의무화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환자에서 외국인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0.18%, 2013년 0.45%에 불과하여 규모 면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 ○ 과도한 투자임무비율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하한선만 설정해 실제 구속력이 전혀 없는 규제 ○ 또한 외국인 의사 고용 의무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외국인 의사 고용이 어려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비율의 하한선을 단기적으로 25%로 하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면서 하한선을 폐지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생략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생략 ②~④ 생략 </td> <td style="padding: 5px;">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일 것 (또는 삭제) 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 법령에서의 규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의사 고용 의무비율(시행령 제20조의 2)도 폐지 - 특정 진료과목에 반드시 외국인 의사를 1명 이상 뒀야 한다는 규제(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도 개선 	현행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생략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생략 ②~④ 생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일 것 (또는 삭제) 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1. 생략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생략 ②~④ 생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일 것 (또는 삭제) 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14.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및 판매처 확대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보건복지위원회/약사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1월 15일부터 약국 외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사실상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에서 13개 품목으로 지정돼 있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높은 복제약(generic drug) 가격을 꼽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2012년(2010년, 2011년) 기준 20.98%(22.82%, 22.57%)로 OECD 평균보다 4.11%p(4.97%p, 5.2%p) 더 높음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를 2020년 6조 3천억 원, 2040년 60~64조 5천억 원, 2060년에는 108~132조 원으로 예상*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2012) ○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고, 자가치료(self-medication)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부작용 및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를 더욱 늘릴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불편사항으로 “필요로 하는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비치된 약의 종류가 너무 적음”이 27.8%로 그 뒤를 이음* ○ 판매처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드럭스토어나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안전상비의약품 주간 평균 판매량의 65.7%가 많은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주말에 판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전후 의약품 사용 및 인식변화 연구(2013) <p>〈약사법〉</p> <table border="1" data-bbox="226 1156 1023 1536"> <thead> <tr> <th data-bbox="226 1156 777 1194">현행</th> <th data-bbox="781 1156 1023 1194">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26 1199 777 1536">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p>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td> <td data-bbox="781 1199 1023 1536">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p>① _____ 삭제</p> <p>② _____ 삭제</p>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p>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p>① _____ 삭제</p> <p>② _____ 삭제</p>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p>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p>① _____ 삭제</p> <p>② _____ 삭제</p>				

1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처리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기획재정위원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 단위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 ○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가 문을 연 직후인 2012년 7월 발의 되었지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결국 폐기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의료 부문 관련 정책 추진을 경제적 관점으로 추진 할 우려가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계속 제시하는 수정안에서도 의료분야가 서비스업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민영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업 육성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 차별 적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6월 기준 등록규제 건수는 총 6,378건이며, 이 중에서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규제는 3,443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 - 서비스산업 R&D 투자확대 지원,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창업·금융·수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서비스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신성장동력을 모색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육성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탄성치(경제가 1% 성장했을 때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2014년 서비스산업 은 0.59로 제조업 0.19에 비해 3배 이상, 2013년 취업유발효과도 10억 원당 17.8명으로 제조업 8.4명에 비해 2배 이상

16. 면세점 매장 수 및 특허기간 제한 완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기획재정위원회/관세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관세법 제176조의2제5항에서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 정부는 지난 3월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기로 함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상호출자제한기업과 달리 외국계 면세점이나 외국의 막강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은 한국 자회사 설립 등의 우회로를 통해 국내 면세점 업계를 잠식 - 현재 대기업 점유율이 52.8%여서 앞으로 신규 매장을 획득하는 것이 어려움 - 지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입점 입찰 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는데, 그 결과 외국계 대기업인 듀프리가 소규모 자본금의 국내 관계사를 통해 운영권을 따냈음 ○ 신규사업자는 5년 후에 빼앗길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대규모 투자에 소극적 - 5년마다 면세점 재허가를 하게 되면 5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꼴 ○ 또한 면세점은 고급 브랜드를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구매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더 유리 ○ 최근 중국과 일본 정부는 면세점 산업을 강화 - 중국 국영기업 CDFG는 하이난성에 세계 최대(72,000㎡) 면세점을 오픈 -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면세점을 확충할 계획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면세점 비율을 폐지하고, 역량과 시설을 갖춘 기업은 지속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p>〈관세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현행</th> <th style="width: 50%;">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자본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td> <td>제176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삭제 ⑤ 삭제</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은 지난해 시내면세점 4개 추가특허로 약 4,000명 고용창출 기대 - 매장 면적 1㎡당 약 0.15명의 신규 고용창출 ○ 만약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일반경쟁입찰에서 실패한 5개 대기업 모두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다면 약 10,3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자본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제176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삭제 ⑤ 삭제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자본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제176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삭제 ⑤ 삭제				

17.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칭)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현황 ○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전략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 규제완화 및 기업투자 유치의 차별성 부족 등으로 성과창출에 한계

평가 ○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이 필요
○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
○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국가정책 차원에서 국토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업종, 입지, 융복합 등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

-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특례 부여

-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 시·도에 전략산업을 지정

<시도별 전략산업 지정(안)>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 ■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자동차 ■ IoT 기반 웰니스산업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의약 ■ 화장품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신산업 ■ 드론(무인기)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센서 ■ 유전자의약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산업 ■ 농생명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 ■ 3D 프린팅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기계 ■ 항공산업(항공부품인종)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IoT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기기 ■ 타이타늄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헬스케어 ■ 관광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관광 ■ 전기차인프라

○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2016년 6월)

○ 10개 시·도에서 발표한 각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예상 고용창출 효과를 더하면 2020년까지 약 210,000명

- 강원 62,000명; 경남 60,000명; 경북 10,000명; 광주 5,000명; 대전 405명; 세종 16,000명; 전남 25,000명; 전북 21,000명; 제주 300명; 충남 10,000명

18.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유통산업발전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규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이해관계자(소비자, 대형마트,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피해액에 비해 그 증가액 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조사결과, 대형마트 소비자의 38%만이 의무휴업일에 대체소비로써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나머지 62%의 소비자는 여전히 대형마트를 이용 ○ 대형마트 영업규제(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3년(2012~2014년)의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증가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소비자, 마트협력업체, 근로자 등 피해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 초래(전경련,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으로 연간 2조 800억 원의 매출피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중소 협력업체 및 농어민의 매출이 총 8,690억 원 감소 - 유통산업에서 21,549개, 협력업체 등 연관산업에서 9,699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총 31,248명의 일자리 타격 ○ 유럽과 일본의 경우 진입규제 및 영업시간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상인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규제는 소비자 편의성이 증시되면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대형마트의 진입규제 및 영업시간 제한은 전면폐지 ○ 다만, 단기적으로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개정하여, 의무휴업일을 대형마트·중소상인·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지역 시장상인의 66.7%는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것에 찬성하여 시장상인들의 인식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 <p><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현행</th> <th style="width: 50%;">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td> <td>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td> </tr> <tr> <td>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td> <td>③ _____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한다.</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_____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_____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한다.						

19.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폐지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합의도출 및 공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업 미이행 중기청 사업조정제도로 이양(상생법 20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법제화(상생법 제20조의 2)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실패한 고유업종제도를 법적으로 부활시킨 제도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 및 소비자후생 감소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는 노동생산성을 약 1.6~3.2% 상승시키며, 노동 투입을 약 9.4% 증가시키고, 자본투입을 약 13% 증가(이병기, 2015) - 대기업의 기존사업 철수를 강제할 경우, 해당업종의 일부 중소기업은 단기적으로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동 업종의 소비자, 대기업 종사자, 협력사 등 다른 관계자의 권익을 침해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기존 중견·대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적합업종 지정기업의 피터팬 현상을 강화하는 역효과 발생 ○ 적합업종 실시 이후 적합업종은 성장성,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쟁력 약화 현상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으로 2013년도 두부시장의 사회적 후생손실은 2011년 대비 최소 6배에서 최대 12배까지 증가 ○ 인도는 1991년 자유화정책 추진 이후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같은 소기업 품목보호 정책을 빠르게 축소·폐지시키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의 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특성을 그대로 포함하는 제도로서 즉시 폐지 필요 <p><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td> <td>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td> </tr> <tr> <td>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td> <td>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td> </tr> <tr> <td>1. (생략)</td> <td>1. (좌동)</td> </tr> <tr> <td>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td> <td>2. (삭제)</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1. (좌동)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삭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1. (좌동)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삭제)										

20.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를 계속사업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현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참여 불가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자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참가기업에 있어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을 경우 매출 성장률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강화로 중소기업 성장 억제(김재현, 2015) ○ 중소기업에게만 특정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공공시장 내 특정 상위 중소기업 독점현상 발생 및 품목규제 방식의 공공조달시장 규제정책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품질저하·산업경쟁력 약화 초래 ○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 철수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판로상실로 인해 급격한 매출감소 등 중견·대기업의 성장저해 문제 발생 ○ 우리나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품목이 아니라 미 연방조달규정에서 규정한 금액 3천~1만5천\$ 미만의 계약은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기회 부여 ○ 한국 조달시장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예외는 향후 체결될 통상조약에서 마찰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EU는 WTO 정부 조달협정 개정 및 양허 확대 협상회의에서 중소기업 정부조달 지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은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의 참여한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정 필요 <p><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td> <td style="padding: 5px;">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① _____ _____ _____ _____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조달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① _____ _____ _____ _____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조달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① _____ _____ _____ _____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조달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21. 사업조정제도의 폐지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p>○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기업의 사업활동의 연기 또는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p> <p>-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업조정신청 등),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등에 규정</p>										
평가	<p>○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에 대한 진입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제도</p> <p>- 사업조정제도는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 권고 가능 또한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한 차례 연장 가능</p> <p>-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떤 시장에서라도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질서 위반</p> <p>○ 사업조정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 위헌의 소지 존재</p> <p>-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 등에 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 사업조정제도는 특정사업분야에서 대기업의 신규진입 및 사업확장을 제한 또는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p> <p>-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소지 및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p>										
개선방안	<p>○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에 대해 '사전적으로' 진입을 규제하는 장치로서 폐지 필요</p> <p>-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사업조정제도 관련 법 조항의 삭제 필요</p> <p><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생략)</td> <td>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폐지)</td> </tr> <tr> <td>제32조(사업조정신청 등) (생략)</td> <td>제32조(사업조정신청 등) (폐지)</td> </tr> <tr> <td>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생략)</td> <td>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폐지)</td> </tr> <tr> <td>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생략)</td> <td>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폐지)</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생략)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폐지)	제32조(사업조정신청 등) (생략)	제32조(사업조정신청 등) (폐지)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생략)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폐지)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생략)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폐지)
현행	개정안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생략)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폐지)										
제32조(사업조정신청 등) (생략)	제32조(사업조정신청 등) (폐지)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생략)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폐지)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생략)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폐지)										

22.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도 폐지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전기공사법, 전기통신공사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도록 규정(전기공사법 제11조 및 정보통신공사법 제25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및 지방계약법 제77조는 동일 구조물 및 단일 공사의 경우 분할계약을 금지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시공 연계성 저하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공기지연 초래, 시공업체 간 책임소재 불분명 및 하자발생 시 원인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증가 초래 ○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발주자의 발주방식 선택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함으로써 발주자의 경제행위에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 ○ 건설생산체계의 비효율성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적·중층적 원·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생산체계의 비효율성,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및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등 비효율성 심화 								
개 선 방 안	<p>○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규제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여부는 발주기관의 기술인력 보유여부나 공사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분리발주 의무규정은 삭제 <p>〈전기공사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td> <td style="padding: 5px;">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삭제) ② (좌동)</td> </tr> </tbody> </table> <p>〈전기통신공사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d> <td style="padding: 5px;">제25조(도급의 분리) (삭제)</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삭제) ② (좌동)	현행	개정안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도급의 분리)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삭제) ② (좌동)								
현행	개정안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도급의 분리) (삭제)								

23. 전기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전기사업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는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6개 발전회사와 민간발전사가 전력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한전이 송·배전 및 판매부문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 ○ 전기사업법 제7조: 제7조(사업의 허가) ③ 동일인에게서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사업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산업구조개편(2001) 시 발전사업 경쟁체제 도입 후, 판매경쟁 도입 예정이었으나 무산 - 도매시장의 운영과 최종적인 소매공급의 가격결정 체계에 있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직적이고, 잘못된 시장가격 신호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 소매시장의 개방 및 소비자선택권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시장에서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이므로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한 가격경쟁 압력이 없는 구조 - 판매사업 분야는 최종 전기수요자와 직접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경쟁효과(전기요금 인하) 가능성 ○ 국가별로 도매시장의 경쟁도입 형태에 차이가 있으나 발전부문의 전력거래를 위한 도매시장 구축과 소매시장의 개방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시장 경쟁도입은 세계 각국에서 실시 중이며 OECD 국가 중에서 판매경쟁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멕시코, 이스라엘, 한국 등에 불과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에서 도매시장의 성공적인 경쟁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점차 판매(소매)시장의 자유화를 확대하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 제7조 「사업의 허가」 제한 요건 폐지 - 신규판매사업자 허가 요건 및 송·배전망 사용 관련 고시 제정 <p><전기사업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7조(사업의 허가) ③ 동일인에게서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d> <td>제7조(사업의 허가) ③ (삭제)</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의 허가) ③ 동일인에게서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업의 허가) ③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의 허가) ③ 동일인에게서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업의 허가) ③ (삭제)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 과제



0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1.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유한책임회사 규제개선
2.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3.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서 첨부 의무화
4. 상장사 합병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폐지
5. 주주총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6. 경영권 안정화·방어제도 도입
7.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배임죄 개선
8.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9.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10. 효율적 기업결합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성 법률요건 폐지
11. 일반지주회사의 용이한 구조조정을 위한 소유지분 규제개선
12. 일반지주회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채비율 규제개선
13. 일반지주회사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손·증손기업의 투자지분제한 개선
14.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15.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순환출자규제 완화
16. 경영권보장을 위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완화
17.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거래 규제 완화
18. 하도급법 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19.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한 효율적 경쟁의 허용
20. 조사 시 피조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21. 배출권 거래제 규제대상 합리화
22.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폐지
2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조건 개선
24.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운용 개선
25. 재활용 실적 인정 기준 개선
2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 환경규제 개선
27. 보육정책 개선방안
28. 여성 근로 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개선
29. 무상급식 개선방안
30. 대학구조개혁 개선방안
31.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제도개선
32. 교육시장 개방 제도개선
33. 수도권 공장입지·설립규제 완화

1.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유한책임회사 규제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법제위원회/상법, 조세특례제한법

- 현황**
-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상법개정에서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
 - 기술은 있으나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은 있으나 기술이 없는 사람이 동업하여 이익을 나누는 기업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어 주기 위함
 - 사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적인 실질을 가진 인적회사로서 회사의 조직구성에 사적자치를 폭넓게 인정
 -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LLC)를 모델로 한 기업형태
 -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 활용도가 낮음

- 평가**
- 자본금제도를 채택하여 자본금 변경 시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유한책임회사의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본금에 대한 규제개선 필요
 - 인적자산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기업을 위한 회사형태를 허용하고자 한 취지로 볼 때 유형적 자산의 출자를 전제로 한 자본금제도는 부적합
 - 사원의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를 허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
 - 현행법에서처럼 노무 출자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적자산 등 무형적 재산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 활성화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법인세와 사원의 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 개선 필요
 - 내부적으로는 조합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처럼 이중과세 문제해결을 위해 과세특례인정 필요

개선방안

- 자본금에 대한 규제 폐지 및 사원의 신용 및 노무출자 허용

<상법>

현행	개정안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3. 자본금의 액	3호 삭제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①항 삭제

-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좌동)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2.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교문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현황	<p>○ 대학에서 나온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성공률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준 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07년 기술지주회사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학 기술 사업화는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함 • 대학 등의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연구성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 실적이 저조한 상황 										
평가	<p>○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 규제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주회사 형태로 주식회사만을, 그 자회사의 형태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을 허용하는 현행 법률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주회사 특성 및 주식회사 설립 및 운용의 복잡성 고려 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형태로 인정 필요 -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30%를 폐지 또는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 비율 법정화로 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과 시의성이 떨어져 특히 등 신기술의 원활한 활용에 지장 초래 -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동력 있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칙주의나 등록주의로 개선 필요 										
개선방안	<p>○ 기술지주회사 인가주의에서 등록주의로 전환</p> <p>○ 지주회사 및 자회사 형태로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인정</p> <p>○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제한 완화</p> <p>〈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td> <td>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td> </tr> <tr> <td>1. 주식회사일 것</td> <td>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일 것</td> </tr> <tr> <td>3.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td> <td>3.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또는 폐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td> </tr> <tr> <td>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td> <td>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로 한다.</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일 것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일 것	3.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3.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또는 폐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일 것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일 것										
3.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3.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또는 폐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3.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서 첨부 의무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국회운영위원회/국회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제출 법률안 대비 의원 발의-가결 비율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발의 규제보다 의원입법 규제가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 가결법률안 건수가 정부제출 가결법률안 수보다 현격하게 높아졌음 • 15대 국회 정부대비 의원법안 비율은 발의안이 1.4배, 가결안이 0.7배였으나, 18대 국회의 경우 발의안이 7.2배, 가결안은 2.4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발의안은 정부발의안의 경우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어 규제에 대해 검증해야 하므로 규제개혁 우회입법의 창구로 남음 ○ 의원 발의안·가결안은 정부제출 법안과 비교해 볼 때 규제 신설·강화 성향이 더 강한 반면, 규제완화·폐지 성향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5월 30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8대 국회 발의·가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발의안·가결안 모두에서 확인 • 의원 발의안 중 규제 신설·강화법안 비중(17.8%)이 정부발의안의 경우(9.4%)보다 높았으며, 규제완화·폐지법안 비중(10.4%)은 정부발의안의 경우(14.4%)보다 낮았음 • 의원법안 가결건수 중 규제 신설·강화 법안비중(17.0%)이 정부안 가결의 경우(7.4%)보다 높았으며, 규제완화·폐지 법안비중(12.6%)은 정부안 가결의 경우(13.4%)보다 낮았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발의 법률안을 통한 의원입법절차에 규제심사제를 도입하여 규제영향 분석서를 첨부토록 개정 <p>〈국회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현행</th> <th style="width: 85%;">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신설〉</td> <td> <p>제79조3(규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규제사전검토서의 제출 및 규제영향평가) ①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관한 사전검토서(이하 "규제사전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규제사전검토서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이 직접 작성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법률안이 포함하고 있는 규제의 내용 2.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3.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키한 또는 존속기한·재검토키한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p>③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사전검토서가 첨부되어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에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신설·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신설〉	<p>제79조3(규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규제사전검토서의 제출 및 규제영향평가) ①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관한 사전검토서(이하 "규제사전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규제사전검토서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이 직접 작성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법률안이 포함하고 있는 규제의 내용 2.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3.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키한 또는 존속기한·재검토키한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p>③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사전검토서가 첨부되어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에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신설·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안				
〈신설〉	<p>제79조3(규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규제사전검토서의 제출 및 규제영향평가) ①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관한 사전검토서(이하 "규제사전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규제사전검토서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이 직접 작성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법률안이 포함하고 있는 규제의 내용 2.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3.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키한 또는 존속기한·재검토키한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p>③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사전검토서가 첨부되어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에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신설·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4. 상장사 합병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폐지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법제위원회/상법, 자본시장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합병 등 회사에 중요한 변경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들은 회사에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조직의 근본적 변경 시, 반대하는 주주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함 ○ 주식매수청구권이 악용되는 사례 발생(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7.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사의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이사회 결의시점에서 획일적으로 확정되고 이후 변경이 불가능하여 주가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을 공시한 회사의 시가가 매수청구가격보다 낮은 경우 합병 사실 공시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후 매수청구권 행사해 차익 획득 • 반대로 매수청구가격보다 상승하면 시장에서 매도해 차익 획득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델라웨어주 등 36개주 회사법과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시장에 주식을 쉽게 팔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퇴로가 마련되어 있어 매수청구권 인정 불필요 ○ 매수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합병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조직 재편에 걸림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청구 부담으로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 무산(2014년) 				
개 선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폐지 <p>〈법률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td> <td style="padding: 5px;">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22조(합병)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22조(합병)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22조(합병)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5. 주주총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법제위원회/상법

-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주주총회 참석 및 운영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대리행사(새도보팅)제도가 2018년 폐지**
 - 2015년에 폐지하려고 했으나 폐지 시 주총결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에 한해 폐지를 3년간 유예
- **현재의 자본시장 환경과 우리나라 상법상 제도 때문에 새도보팅 폐지 시 상당수의 기업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불가능**
 - 주주들의 단기주식보유 경향 및 무관심으로 주총참여 자체에 소극적
 - 우리나라 상법상 주총결의 요건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함

현황

구분	의사 정족수	의결정족수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찬성	보통결의	특별결의
한국	×	(보통 1/4 찬성) (특별 1/3 찬성)	출석과반수	출석 2/3
미국	×	×	출석과반수	정관차지
일본	과반수 참석	×	출석과반수 (의사정족수: 정관배제 가능)	출석 2/3(의사정족수: 정관으로 1/3로 조정 가능)
독일	×	×	출석과반수	출석 3/4

- 특히,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우리나라만의 규제 때문에 해당 의안의 주총 승인이 매우 어려움

평가

- **새도보팅 폐지 시 주총결의에 필요한 주주들을 모으기 어려워 경영에 차질**
 - 주총 의결권 확보를 위해 주주명부상의 주소로 방문하여 위임장을 수령해야 하나 주식이 분산되어 있어 일일이 주주 방문 시 상당한 비용 수반
- **주주총회 결의 불성립 시 실적부진 및 임기만료 경영진 교체 지연되고 감사·감사위원·사외이사 선임의안 결의 무산 시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위험**
 - 원활하지 못한 주총운영으로 경영상황 악화, 기업가치 하락 등 초래
 - 실제 상장폐지 된 회사들의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가 하락률이 90%

개선방안

- **단순투자목적 성향의 자본시장의 현실과 주요국에서는 실제 주총에 참석한 의결권만으로 총회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상법개정**
 - 현행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찬성요건 폐지
 - 보통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특별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개정
-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3%를)은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폐지 검토**
 - 이 제도는 본래의 목적인 소수주주 보호보다는 지배구조상의 지위를 위협할 만큼의 큰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큼
 - 외국계 투기자본 소버린은 3%를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15%의 지분을 쪼개 5개 자회사로 분산하여 모든 의결권 행사한 반면 SK그룹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

6. 경영권 안정화·방어제도 도입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법제위원회/상법

- 현황**
- 외국자본의 기업가치 파괴적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 '98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국부유출 사례 발생
 - 예) '05년, 소버린 vs. SK(주) 간 경영권 분쟁, SK(주) 경영권방어 비용 1조 원
 - '98년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고배당 증가 및 경영권 방어위한 자사주 매입비용은 증가한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
 -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 발의(정갑윤 의원, '15.8.4)

- 평가**
- 방어비용을 투자로 전환하며 성장하기 위해 효율적 경영권방어제도 필요
 - 중국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한 이유는 경영권방어제도(차등의결권) 때문
 -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신규 일자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고성장 기업들의 상당수는 차등의결권 등을 통해 안정된 경영권 유지

-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M&A 시도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

현행	상법 개정안
〈신설〉 제432조의2(신주인수선택권)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일정한 기간(이하 "행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배제하거나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 1주에 다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

현행	상법 개정안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 및 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또는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 의결권의 수,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규정하는 종류주식의 발행은 원시정관 또는 특별결의에 의해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야 한다.

- 주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황금주 도입

현행	상법 개정안
〈신설〉 제344조의4(특정한 사항의 거부권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요건 및 조건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선방안

7. 경영활동 위축시키는 배임죄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법제위원회/상법, 형법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판단으로 회사에 손실발생 위험만 야기시켜도 배임죄 처벌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형법 제355조) •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특경법) ○ 배임죄 규정의 모호성으로 무죄 선고율이 높고 법원 간 판단이 엇갈림 ○ 배임죄 요건 명확화를 위한 형법개정안('15년 정갑윤 의원)과 경영판단원칙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13년 이명수 의원) 발의 중
----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투자)실패에 대한 배임죄 처벌위험 때문에 투자 및 경영활동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개사 기업경영자 조사에서 60%가 배임죄로 인한 경영판단 애로 호소 - 법률 전문가 52명 조사에서 69.2%가 배임죄로 인한 기업가정신 위축 우려 ○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배임죄 처벌사안을 민사적으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임죄는 독일계 법체계를 가진 일부 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에만 있는 범죄이고 이들 나라에서조차도 실제 적용 사례가 극히 적음 • 우리나라에서 처벌되는 경영실패와 계열사 간 지원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익취득을 위한 의도적 행위에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경영판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 제외 <p><상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50%;">현행</th> <th style="width: 50%;">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상법 제382조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td> <td>상법 제382조②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형법상 배임죄 성립요건 명확화 <p><형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50%;">현행</th> <th style="width: 50%;">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td> <td>제355조(횡령, 배임) ②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상법 제382조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82조②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현행	개정안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현행	개정안								
상법 제382조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82조②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현행	개정안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현실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전항의 형과 같다.								

8.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자본시장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에서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일명 5% Rule)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147조 ①)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의 취득·변동 공시하도록 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적 주식매집을 통한 경영권 침탈 방지 및 자본시장 투명성 확보 기능 ○ 현행 '보고비율(5%)'과 '보고기간(5일)'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함 ○ 보고비율은 낮추고 보고기간은 단축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에서 투기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 국가에서 제도 개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보유비율 10% → 5%, 보유기간 10일 단축 검토 중 • 영국은 보유비율 5% → 3%, 보유기간 2일 이내 • 독일은 보유비율 5% → 3%, 보유기간 4일 이내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비율을 5% → 3%로 하향, 보고기간을 5일 → 3일 <p><법률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중략)</td> <td style="padding: 5px;">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2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중략)</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중략)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2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중략)
현행	개정안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중략)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2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중략)				

9.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현 황	<p>○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행정규제의 투명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로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비용의 총량관리제도가 미비</p>				
평 가	<p>○ 영연방국가에서는 이미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OIOO(one in one out), 호주와 캐나다의 Off-set 제도는 비효율적 규제도입을 억제하고 규제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은 OIOO 도입 후 2년간 규제비용을 8억 파운드(약 1조 4천억 원) 절감하는 효과 획득 <p>○ 한국에서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만 됐을 뿐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시행이 지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시범부처 시행 및 2015년부터 전면 도입의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여전히 시범부처만이 신규 규제도입에 따른 규제비용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운영에 한계 				
개 선 방 안	<p>○ 부처별 규제비용총량관리 및 신규도입 규제에 따른 비용추계 및 상응비용의 규제폐지를 명문화시키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 비용을 가진 기존규제의 폐지·완화하도록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개정 <p>〈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상법 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신설〉</td> <td> <p>제22조의2(규제 비용의 총량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에 인하여 규제순비용이 발생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의 규제순비용 총량(이하 "규제비용총량"이라 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2.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5.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6. 그 밖에 행정질서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p>③ 제1항에 따른 규제순비용의 범위·산정방법, 기존규제의 정비 절차 등 규제비용 총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td> </tr> </tbody> </table>	현행	상법 개정안	〈신설〉	<p>제22조의2(규제 비용의 총량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에 인하여 규제순비용이 발생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의 규제순비용 총량(이하 "규제비용총량"이라 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2.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5.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6. 그 밖에 행정질서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p>③ 제1항에 따른 규제순비용의 범위·산정방법, 기존규제의 정비 절차 등 규제비용 총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상법 개정안				
〈신설〉	<p>제22조의2(규제 비용의 총량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에 인하여 규제순비용이 발생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의 규제순비용 총량(이하 "규제비용총량"이라 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2.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5.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6. 그 밖에 행정질서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p>③ 제1항에 따른 규제순비용의 범위·산정방법, 기존규제의 정비 절차 등 규제비용 총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0. 효율적 기업결합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성 법률요건 폐지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현 황	<p>○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및 제4조는 기업결합 시 일정 시장점유율과 해당시장 내 기업순위로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도록 규정</p> <p>- 법률상 ① 1위기업 점유율 50% 이상, ② 3대기업 점유율 합계 75% 이상, ③ 1위 2위 간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규정</p>				
평 가	<p>○ 현행 법률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경제이론적 근거가 약하며, 기업결합에 대한 판단을 제약</p> <p>- 우리 경쟁법은 점유율과 시장 내 기업순위로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쟁 당국이 해당규정을 도외시키고 기업결합사건의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이 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25개 사건 중 23개 사건이 모두 법정추정조항과 일치하고 있어 법정추정조항이 경직적으로 적용됐음을 시사 <p>- 미국, EC 등 주요국은 법률에 추정요건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심사규정에서도 실질적 경쟁 관계를 검토하도록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은 기업결합 판단요건을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도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추정요건을 삭제하고 실질적 관계를 분석하도록 개정 				
개 선 방 안	<p>○ 기업결합 경쟁제한성에 대한 법률상 추정요건을 삭제하고 경쟁당국이 심사규정을 따라 판단하도록 개정</p> <p><공정거래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td> <td>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③ (좌동) ④ 삭제</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③ (좌동) ④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③ (생략)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③ (좌동) ④ 삭제				

11. 일반주주회사의 용이한 구조조정을 위한 소유지분 규제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현 행	<p>○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해 주식지분을 40%(상장법인의 경우, 국외상장법인의 경우,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는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p> <p>- 손자회사는 금융사·보험사를 제외한 회사의 주식지분을 100% 보유(외국합작의 경우는 50%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증손자회사의 소유가 허용되며, 증손자회사의 다른 국내 계열사 소유행위는 금지</p>						
평 가	<p>○ 일반주주회사제도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입금불산입이라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반면, 외국에 비해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전환비용이 높고 전환한 뒤에도 기업경영에 장애요소가 다수</p> <p>- 소유지분이 감소하면 세제상의 혜택상실과 적대적 M&A 위협에 직면하게 되므로 소유지분에 대한 최소규정은 불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 계열사의 대부분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분기준의 두 배(비상장사 80%, 상장사는 40%) 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나 지주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적은 지분을 소유 						
개 선 방 안	<p>○ 일반주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해 소유지분 규제제한 폐지</p> <p><공정거래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생략)</td> <td>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동일)</td> </tr> <tr> <td>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지주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d> <td>2. 삭제</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생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동일)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지주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생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동일)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지주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12. 일반지주회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채비율 규제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현 황	<p>○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는 일반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p>				
평 가	<p>○ 2015년 10월 현재 지주회사 부채비율 평균은 41.6%로서 현저하게 낮으나, 영업상의 손실로 인한 자본잠식이 이뤄지거나 합병을 위한 인수목적회사를 설립할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하여 범위반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높은 가능성</p> <p>- 2009년 9월 지주회사인 이수과 TAS손해사정서서비스는 자본잠식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으며, 알파라발한국홀딩스와 두산모트롤홀딩스는 인수목적회사를 설립하면서 부채비율 상한선을 초과</p>				
개 선 방 안	<p>○ 부채비율 200% 제한의 폐지</p> <p>〈공정거래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td> <td>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동일) 1. 삭제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동일) 1.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동일) 1. 삭제				

13. 일반지주회사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손·증손기업의 투자지분제한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현 황	<p>○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금융사·보험사를 제외한 회사의 주식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증손자회사의 소유가 허용되며, 증손자회사의 다른 국내 계열사 소유행위는 금지(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p> <p>-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6항 제2호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합작의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50% 보유하도록 허용</p>					
평 가	<p>○ 일반지주회사제도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입금불산입이라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반면, 외국에 비해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전환비용이 높고 전환한 뒤에도 기업경영에 장애요소가 다수</p> <p>- 소유지분이 감소하면 세제상의 혜택상실과 적대적 M&A 위험에 직면하게 되므로 소유지분에 대한 최소규정은 불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 계열사의 대부분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분기준의 두 배(비상장사 80%, 상장사는 40%) 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나 지주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적은 지분을 소유 					
개 선 방 안	<p>○ 일반지주회사의 손자·증손자회사에 대해 소유지분 규제제한 폐지</p> <p><공정거래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p>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p> <p>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td> <td> <p>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p> <p>④ (삭제)</p>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p>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p> <p>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p>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p> <p>④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p> <p>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p>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p> <p>④ (삭제)</p>					

14.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현황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

평가

- 지주회사형태를 취하고 있는 외국 기업도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드드는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 허용
 - 지주회사구조를 가진 미국의 GE, GM, Ford, Boeing도 금융계열사(보험, 리스, 소비자금융, 신용카드 등)를 보유
- 금융지주회사법과의 일관된 정책시행을 위해서도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소유는 허용해야 할 사항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업이 아닌 제조업기업 등 비금융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계열사 소유금지 규제는 일반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유인으로 작용

2015년 지주회사 비(非)전환 대기업집단의 금융사 보유 여부

구분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신세계	금호아시아나	대림	동부	현대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금융사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	-	-	보유	보유	-	-	
구분	효성	영풍	케이씨씨	미래에셋	동국생명	교보생명	태광	현대산업개발	이랜드	태영	삼천리	대성	중흥건설	한솔
금융사	보유	-	-	보유	-	보유	보유	보유	보유	-	보유	보유	-	-

주: 총수 있는 집단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2015.10.29.

개선방안

- 금융결합 시너지효과를 통한 글로벌경쟁력 제고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 허용

<공정거래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5. (삭제)

15.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순환출자규제 완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현황	<p>○ 2013년 12월 31일, 상호출자 제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제를 공정거래법에 신규 도입(공정거래법 제9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합병·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순환출자가 발생하거나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 등을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목적 								
평가	<p>○ 공정거래법에서 순환출자를 별도로 규제하는 외국의 입법 사례는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출자는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다양한 국가에 산재 -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판결은 순환출자금지 입법 사례가 아니라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주된 쟁점으로 다룬 것에 불과(최준선, 2012) <p>○ 기업구조조정외에도 순환출자 규제가 적용될 경우 기업부담증대 및 경영활동제한의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출자규제의 적용으로 인해 경영권 상실 및 기업집단의 분할가능성 증대, 막대한 규제준응 비용, 장기적 안목의 투자계획 감소 등 우려 - 특히 신규순환출자를 규제할 경우 향후 기업인수가 어려워지며,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곤란해지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현금보유 유인이 급증할 우려 								
개선방안	<p>○ 신규순환출자규제가 기업구조조정과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제9조의2 제3항에서 유예기간을 확대(개정안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순환출자규제를 폐지(개선안2) <p><공정거래법 개정안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2. 제2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3.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③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2. 제2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년 3.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년 </td> </tr> </tbody> </table> <p><공정거래법 개정안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② 삭제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2. 제2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3.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③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2. 제2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년 3.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② 삭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2. 제2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3.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③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2. 제2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년 3.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② 삭제								

16. 경영권보장을 위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완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회사는 비금융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발행총주식수의 일부분으로 제한(공정거래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을 제한적으로나마 행사할 수 있는 규모는 과거 30%까지 허용됐으나 현재는 15%로 낮춰진 상태 *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2001년 외국의 적대적 인수합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일부분 행사할 수 있도록 30%까지 허용했었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중복 규제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제24조에서 금융회사가 동일계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승인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적 규제에 해당 - 또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남용 차단'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서 금융회사의 주식보유 승인, 대주주의 거래제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제한 등 강력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이중규제 ○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이 존재하지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어 경영권방어에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가 다수 발생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15% 이내로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이중적 규제에서 벗어나 행사의결권을 기존의 30% 수준으로 완화 <p><공정거래법 개정안></p> <table border="1" data-bbox="229 1065 1020 1489"> <thead> <tr> <th data-bbox="229 1065 707 1100">현행</th> <th data-bbox="707 1065 1020 1100">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29 1100 707 1489">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td> <td data-bbox="707 1100 1020 1489">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2. (동일)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2. (동일)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2. (동일)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7.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거래 규제 완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 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회사임에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을 증가시킨 회사도 상당수 존재하여 본 규제가 일률적 감소효과를 갖는 것은 아님 ○ 본 규제는 지배주주 지분이 요건에 해당하면 의도와 관계없이 사적편취 목적의 거래로 의제한다는 문제점 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익편취 규제는 지배주주의 터널링 의도가 없는 기업집단 계열사 간 효율적 내부거래도 제한할 우려 - 총수가족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내부매출비중이 높아도 수익성에 영향이 없던 반면, 총수가족지분이 높은 계열사로부터 매입한 계열사의 수익성은 증가(김현중 2016) ○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이러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있는 대규모 기업집단만 규제가 적용되어져 효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있는 대기업을 총수없는 대기업, 총수있는 중견기업,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 ○ 규제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거래가 감소하고 있어 규제강화는 설득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에서 제외된 계열사의 내부거래도 감소하고 있는 등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감소 추세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집단의 효율성 강화를 통한 계열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폐지 <p><공정거래법 개정안></p> <table border="1" data-bbox="229 1034 1022 1520"> <thead> <tr> <th data-bbox="229 1034 853 1069">현행</th> <th data-bbox="857 1034 1022 1069">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29 1074 853 1520">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td> <td data-bbox="857 1074 1022 1520">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삭제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삭제				

18. 하도급법 손해배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하도급법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 계약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하도급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하도급법 제35조) ○ 하도급법에서는 △부당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8조), △부당반품 금지(제10조), △납품단가의 부당감액 금지(제11조)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기업의 기술 유용행위금지(제12의3)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기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된 것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거래에서의 납품단가 결정에 공법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음 ○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 사안에 대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중복적 제도 ○ 현행 하도급법상 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벌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고, 동시에 부과될 경우 4배까지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음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집행단계에서 납품단가 인하의 부당성 등에 대해 입증책임을 갖고 검토하도록 개선 ○ 손해배상 소송 시 원고가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3배수 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p><하도급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략)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d> <td style="padding: 5px;">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동일) ③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액수의 2배수 이상 배상해야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징금 납부부분을 환급한다.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략)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동일) ③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액수의 2배수 이상 배상해야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징금 납부부분을 환급한다.
현행	개정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략)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동일) ③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액수의 2배수 이상 배상해야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징금 납부부분을 환급한다.				

19.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한 효율적 경쟁의 허용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품·제품지원 등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한 경쟁이 제한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품·제품지원 등 경제적 이익제공은 효율적인 경쟁의 한 형태로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지하는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위법으로 제한할 경우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억제시킬 우려 ○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는 부당고객 유인행위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유형이 신문매체의 무가지 제공이며, 다음 순위로 많은 사건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매체의 경품 제공은 치열한 매체 간 경쟁에서 비롯한 효율적 경쟁이며,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제품설명 등 효율성이 부분적으로 인정 ○ 주요국에서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한 경쟁을 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제한하는 국가에서도 그 범위가 한국과 달리 최소한으로 규제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한 경쟁을 일률적으로 위법행위로 판단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적용하도록 개정 <p>〈공정거래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td> <td>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8. (생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1~8. (좌동)</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생략)	1~8. (좌동)
현행	개정안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생략)	1~8. (좌동)						

20. 조사 시 피조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제50조의3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처분이행 및 조사가 곤란한 경우 이를 연기하도록 신청 가능하지만, 사전통지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의 피규제대상은 여타 행정기관의 조사절차에 비해 권리보장이 미흡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법 제50조 제2항과 제4항은 실무상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개시 직전에 공문서를 통해 조사기간, 목적 등을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포함 - 행정조사기본법, 국제기본법, 관세법 등에서는 행정관청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7~10일 전에 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하는 의무규정을 포함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조사대상에게 조사 10일 이전에 조사기간, 목적, 범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부당공동행위 사건 등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통지의무를 면제 ○ 사전통지 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자가 조사를 받지 못할 경우 연기신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0조의3에서 규정한 연기신청 규정에 결과통지 규정을 추가 <p>〈공정거래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u>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u></p> <p>①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p> <p>③ (신설)</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u>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u></p> <p>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사를 위해 제50조 각 항에 규정된 조사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①의 규정에 의해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②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p>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p><u>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u></p> <p>①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p> <p>③ (신설)</p>	<p><u>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u></p> <p>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사를 위해 제50조 각 항에 규정된 조사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①의 규정에 의해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②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u>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u></p> <p>①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p> <p>③ (신설)</p>	<p><u>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u></p> <p>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사를 위해 제50조 각 항에 규정된 조사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①의 규정에 의해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②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p>				

21. 배출권 거래제 규제대상 합리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직접배출·간접배출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하는 행위이며 간접배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간접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행위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단계에서 배출되지 않는 간접배출을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에 포함시켜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기업-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생산업체는 배출권 구매비용을 전력단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간접배출 기업은 초과배출 시 배출권 구매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므로, 간접배출 기업은 원가 상승, 온실가스 비용 등의 이중부담에 직면 - 환경부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고 있는 EU 배출권 거래제도(ETS)에서도 산업부문의 직접배출만 규제하고 있어 국제기준과도 차이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업 배출권 할당 조항에서 간접배출은 제외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장 시행이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순으로 간접배출 제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 <p><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단서 조항 추가></td> <td style="padding: 5px;">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해서는 직접배출만을 대상으로 한다</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배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 시 '16~17년 일자리 약 3만 개 이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2017년의 경우 간접배출이 제외된다면 약 1조 6,764억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Hyun&Oh(2015)의 간접배출 비중 사용)되며 2016~2017년간 일자리는 최소 30,463개 증가할 것으로 추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단서 조항 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해서는 직접배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단서 조항 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해서는 직접배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22.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폐지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현황	<p>○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의무를 명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 안에서 배출을 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량을 구매하여만 온실가스 초과 배출 가능 -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202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30% 감축할 것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기본법의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 				
평가	<p>○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전망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GDP 증가율, 인구 증가율, 산업구조, 에너지원 전망, 온실가스 감축기술 옵션 등에 따라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전망하는 시점, 전망하는 사람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를 절대적인 수치로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 - 국내외 상황에 따라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배출 전망치에 사용된 정보도 비공개인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만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GDP 성장률 목표를 법에 명기하는 것과 유사 - 과도한 감축목표 설정 시 투자위축과 비용증대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경제성장을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 				
개선방안	<p>○ 절대적으로 하나의 수치로 나올 수 없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전망치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무리이며 따라서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삭제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삭제하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량은 2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반영 <p><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p> <table border="1" data-bbox="229 1095 1020 1451"> <thead> <tr> <th data-bbox="229 1095 623 1130">현행</th> <th data-bbox="623 1095 1020 1130">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29 1135 623 1451">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td> <td data-bbox="623 1135 1020 1451">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삭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삭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현행	개정안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삭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조건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정무위원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현 황	<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당대상 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할당된 배출권이 취소</p> <p>- 동법 제17조에 따르면 할당대상 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에도 할당·조정된 배출권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p>				
평 가	<p>○ 단서 조항이 없는 관계로 시설 가동의 정지 사유에 상관없이 1년 이상 정지되면 배출권이 취소되어 기업의 구조개선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p> <p>- 예컨대 재무구조 개선, 또는 생산 고정비 감축을 위해 한 개 이상의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생산물량 전량을 나머지 생산시설에 이전해 생산하는 경우에도 취소 할당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점 발생</p> <p>- 기존 생산시설의 생산물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경우는 현 제도 하에서 산·증설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추가할당이 불가</p>				
개 선 방 안	<p>○ 할당대상 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중지된 시설의 생산량을 다른 시설이 흡수한 경우 기존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치 않도록 개정</p> <p><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조정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p> <p>.....</p> <p>4.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p> <p><단서조항 추가></p> <p>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은 경우</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조정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p> <p>.....</p> <p>4.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단 기업 내 동일 제품생산 시설이 정지된 시설의 생산량을 흡수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은 경우</p>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p>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조정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p> <p>.....</p> <p>4.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p> <p><단서조항 추가></p> <p>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은 경우</p>	<p>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조정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p> <p>.....</p> <p>4.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단 기업 내 동일 제품생산 시설이 정지된 시설의 생산량을 흡수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은 경우</p>
현행	개정안				
<p>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조정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p> <p>.....</p> <p>4.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p> <p><단서조항 추가></p> <p>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은 경우</p>	<p>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조정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p> <p>.....</p> <p>4.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단 기업 내 동일 제품생산 시설이 정지된 시설의 생산량을 흡수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 받은 경우</p>				

24.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운용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환경노동위원회/화학물질관리법

현 황	<p>○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동법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필요</p> <p>- 유해화학물질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p>									
평 가	<p>○ 융통성 없는 일괄적인 규제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연구개발을 저하시켜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p> <p>- 현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 기준은 신규와 기존 화학취급시설에 대한 구분이 없어, 기존 화학취급시설이 화관법 이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가동정지 및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p> <p>- 연구개발 화학물질에 대한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로 인하여 물리적·시간적 손실발생이 불가피하고 비용 부담으로 연구개발 유인이 감소</p>									
개 선 방 안	<p>○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 기준을 구분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기준을 완화 (화학물질관리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p> <p>.....</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단서조항 추가></p> <p>.....</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p> <p>.....</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존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조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p> </td> </tr> </tbody> </table> <p>○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은 장외 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을 면제 (화학물질관리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단서조항 추가></p> <p>.....</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화학물질에 한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부령으로 따로 정한다.</p> <p>.....</p>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p> <p>.....</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단서조항 추가></p> <p>.....</p>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p> <p>.....</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존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조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p>	현행	개정안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단서조항 추가></p> <p>.....</p>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화학물질에 한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부령으로 따로 정한다.</p> <p>.....</p>
현행	개정안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p> <p>.....</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단서조항 추가></p> <p>.....</p>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p> <p>.....</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존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조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p>									
현행	개정안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단서조항 추가></p> <p>.....</p>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화학물질에 한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부령으로 따로 정한다.</p> <p>.....</p>									

25. 재활용 실적 인정 기준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환경노동위원회/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현황	<p>○ 현 제도하에서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경우 자사 출고 제품만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타사 출고 제품은 불인정</p> <p>- 현 법률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만을 회수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p>				
평가	<p>○ 현재의 규정은 동 법의 타 조항에서 언급한 규정과 맞지 않으며 해외기준과도 동떨어진 규제로서 기업의 불편만을 가중시켜 경영활동을 저해</p> <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5호에서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을 회수하도록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재활용 실적으로는 자사 제품의 폐기물만 인정 <p>- EU WEEE(폐 전기전자 제품의 생산자의 회수, 재활용 의무에 관한 규정)를 포함한 어느 국가에서도 자사 제품만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전무</p>				
개선방안	<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재활용 대상을 자사의 출고제품으로만 제한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p> <p><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p> <table border="1" data-bbox="229 963 1016 1454"> <thead> <tr> <th data-bbox="229 963 623 1003">현행</th> <th data-bbox="623 963 1016 1003">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29 1003 623 1454"> <p>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p> </td> <td data-bbox="623 1003 1016 1454"> <p>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동종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p>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p>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p>	<p>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동종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p>	<p>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동종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p>				

2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 환경규제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환경노동위원회/수도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은 공장입지 환경규제가 다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금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서 규정 -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 제7조의2에 따르며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 불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규제로 인한 입지 제한으로 해당 지역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지역경제발전의 어려움이 심화되어 규제완화의 목소리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에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 한편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포천시 관인 상수원보호구역 등 기타 지역에서도 입지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 고조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일적인 입지규제는 폐지하고 환경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역 내 친환경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도모하고 지정 및 취소 절차를 구체화 - 관련법들의 일괄적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정지역에서의 규제완화 필요성이 클 경우 대청호 사례와 같이 신규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완화 <p>〈수도법〉</p> <table border="1" data-bbox="229 1041 1020 1385"> <thead> <tr> <th data-bbox="229 1041 623 1076">현행</th> <th data-bbox="623 1041 1020 1076">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29 1076 623 1385">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항 추가〉 </td> <td data-bbox="623 1076 1020 1385">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③ <u>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검토결과 및 지역적 필요성에 따라서 특별대책지역의 일부를 특별대책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u>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탄강 주변 상수원보호구역(관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되면 약 7,90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10,591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망 	현행	개정안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항 추가〉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③ <u>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검토결과 및 지역적 필요성에 따라서 특별대책지역의 일부를 특별대책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u>
현행	개정안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조항 추가〉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③ <u>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검토결과 및 지역적 필요성에 따라서 특별대책지역의 일부를 특별대책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u>				

27. 보육정책 개선방안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보건복지위원회/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현황

- 시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은 과거 소득계층별로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이 시행
 - 현재 무상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용 및 범위는 각 법령의 시행령에 명시

평가

-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정부가 일반조세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상위층 및 부자까지 지원하면서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
 - 누리과정 비용 부담 문제로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 간 갈등 심화
 - 무상보육정책으로 전업주부도 가정양육보다는 시설보육을 선호하면서 시설보육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시설보육이 절실한 취업여성은 오히려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상까지 발생

- 누리과정 재원부담 논란, 시설보육 서비스 쏠림 현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보육정책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

〈영유아보육법〉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소득하위 50%(혹은 70%)에 한하여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현행	개정안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소득하위 50%(혹은 70%)에 한하여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누리과정의 경우 현재의 정책을 소득하위 50%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2015년 기준 약 2조 7,31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단위: 억 원)

2015년 소요비용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70%	
	소요액	절감액	소요액	절감액
39,641	12,326	27,315	23,698	15,943

자료: 바른사회시민회의(2015), 한국경제연구원

28. 여성 근로 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보건복지위원회/영유아보육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보육의 질 논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시간에 따른 불만 등으로 여성 근로 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개선 목소리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보육 교사의 자질과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도 대두 - 어린이집 입소 시 대기기간 소요에 따라 여성 취업자의 보육 어려움 가중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근로 지원을 통해 여성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육제도와 보육환경을 개선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여건을 제고하고 어린이집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일 필요 - 영유아의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지만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5.7%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는 평가 ○ 규제중심의 보육정책, 비현실적인 보육료 등은 아이들 입장에서 최선이 아니며 어린이집 재정악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정적 요인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편성을 조정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규제는 완화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자율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어린이집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비현실적인 보육료와 교육환경을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 -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충하여 저소득층과 기타 수요에 부응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난관은 재원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절약하고 이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전환 • 토지 값이 추가로 들지 않는 공공기관 소유 부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p><영유아보육법></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td> <td>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운영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년 대비 변동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운영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년 대비 변동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현행	개정안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운영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년 대비 변동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29. 무상급식 개선방안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학교급식법

현황

- 무상급식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등장했는데 이후 정치권이 전면시행을 강조하면서 주요 정치공약으로 발전
- 무상급식은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정도는 각 지역마다 상이
 - 2014년 현재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1,619개교에서 100% 급식을 시행 중이며 전체 소요경비는 5조 6,502억 원으로 집계

평가

-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가
 -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환경에 대한 투자는 감소
 - 무상급식은 급식단가를 낮춰 오히려 학교급식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
 - 미국의 경우도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
-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사이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행정비용도 증가
 - 최근의 경상남도와 충청북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청과 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매년 발생할 수 있으며 부자들에게까지 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상급식의 타당성 논란도 지속

○ 전면적 무상급식은 지양하고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 자녀 중심의 선별적 급식지원으로 전환하여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일 필요

<학교급식법>

현행	개정안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3.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한다. 1. 소득하위 50%(혹은 70%) 가구의 학생 2. 3. 4. <삭제>

○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로 전환 시 약 2조 2천억 원 비용 감소(2014년) (단위: 억 원)

2014년 보호자 부담 제의 소요비용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70%	
	소요액	절감액	소요액	절감액
39,623	17,561	22,062	29,192	10,431

자료: 2014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한국경제연구원

30. 대학구조개혁 개선방안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립학교법

현황

- 정부는 지방대학, 전문대학 등에서의 학생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
 - 구체적으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정원감축 방안을 추진
 - 정원감축 및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법적근거로서 2014년 4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정원감축 등의 대학구조조정을 대학특성화 사업 및 각종 국가시책과 연계

평가

- 이전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학구조개혁은 한결같이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한계성과 부작용 우려
 - 대학 구조조정 목적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
 -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
 - 현재의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받기 위해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

-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의 퇴출제도를 개선할 필요
 - 청산을 통해 설립자가 남은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자발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

<사립학교법>

현행	개정안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② ③ ④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재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귀속주체를 정할 수 있다.(개정안 - 기존 현행의 ②, ③, ④항을 대체)

개선방안

- 대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자발적인 퇴출이 용이하도록 대학의 합병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사립학교법>

현행	개정안
제36조(합병절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합병절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 시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제도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초중등교육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가운데 중요한 과제로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편, 절대평가 도입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장 - 2014년 9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법)을 시행하여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교의 선행학습을 금지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과도한 경쟁을 완화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교육 부실화는 단순히 선행학습 때문이 아니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제로 인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제약되어 발생한 결과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고는 하지만 이보다는 공교육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중요 -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정상화가 우선 ○ 현재의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생들의 특성과 능력차 무시, 학교현실 도외시 등과 같은 문제점도 내포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공급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사교육 수요 감소, 공교육의 질 향상 도모 - 공교육 시스템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도입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도입·시행(차터스쿨) -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모색 - 현재 시행 중인 공교육 정상화법은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 <p><초중등교육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u>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u>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u>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교육시장 개방 제도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국토교통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현 황	<p>○ 교육시장의 국제화는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불황 등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학 이상의 해외 체류 유학생 수는 약 21만 5천여 명 - 유학수지 적자도 2014년 37억 달러(4조 8천억 원)를 기록, 적지 않은 수준 				
평 가	<p>○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는 해외 유학의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고 국내 대학 교육수준의 업그레이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p> <p>○ 해외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영리법인 과실송금이 불가,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규제도 존재 - 경제자유구역, 특별자치도 등에서 외국교육기관 유치 시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를 제외하고는 영리법인에 의한 교육기관 설립 불가 				
개 선 방 안	<p>○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허용, 내국인 학생 수 비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확대하고 교육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법인의 경우 과실송금을 허용하되 전체 잉여금에서 송금비율을 규정 - 장기적으로는 영리법인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토록 개선 - 내국인 입학 비율을 교육감 허가 없이 50%까지 확대하고 추후 상향조정 <p>〈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231조(회계처리 등)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에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단서조항 추가)</td> <td style="padding: 5px;">제231조(회계처리 등)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에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td> </tr> </tbody> </table> <p>○ 교육시장 개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약 26,000개의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개선으로 현재 10개의 외국교육기관(제주 국제학교 포함)이 2배(20개)로 늘어날 경우 5년간 26,232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비핵방안(한국경제연구원, 2012) 참고하여 재계산 	현행	개정안	제231조(회계처리 등)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에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단서조항 추가)	제231조(회계처리 등)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에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231조(회계처리 등)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에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단서조항 추가)	제231조(회계처리 등)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에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33. 수도권 공장입지·설립규제 완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국토교통위원회/수도권정비계획법

현황	<p>○ 수도권은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관리되며, 수도권 입지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권역별 입지허용 업종 및 면적제한으로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공장총량제, 공업용지 공급물량 제한, 공업지역 지정,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규제 등으로 총량관리 - 권역별 공장의 신·증설의 경우 산업집적법에서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업종(첨단/일반), 입지유형(산업단지/개별입지)별로 차등 규제 				
평가	<p>○ 수도권규제는 기업·공장의 지방 이전보다 적절한 투자시기를 놓치게 해 투자를 포기·철회하거나 불가피하게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연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이후 62개 기업에서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해 투자포기, 투자보류, 투자지연, 지방이전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3조 3,329억 원이며, 1만 2,059명에 달하는 고용 손실 발생 *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2015) 				
개선방안	<p>○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수도권정비계획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제18조(총량규제)</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제18조(총량규제)</p> <p>①~④ 삭제</p> </td> </tr> </tbody> </table> <p>○ 수도권 투자억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에 기업입지 인센티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전권역은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중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의 규제완화 수준으로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신설 허용되도록 법령 개정 -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도시형 및 첨단업종 공장신설 허용 - 지방에 세제·자금 지원 및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특례 적용 <p>○ 경기연구원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9월 기준 수도권 규제 개선으로 147,000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p> <p>*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2014)</p>	현행	개정안	<p>제18조(총량규제)</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8조(총량규제)</p> <p>①~④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18조(총량규제)</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8조(총량규제)</p> <p>①~④ 삭제</p>				



0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 허용업종 확대
2. 통상임금 범위의 명확화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개정
4. 경영상해고 요건 명확화
5.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
6.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7.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면제제도
8.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9. 쟁위행위 시 직장검거 장소 명확화
10.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할증 기준 완화

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 허용업종 확대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환경노동위원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
황

- 한국은 32개 업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는 Positive방식, 동종·유사 업무에 대한 처우차별 금지를 법으로 명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특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은 전면 금지

평
가

- 세계적으로 파견규제는 완화되고 있으며 대부분 Negative방식 전환 추세
- 파견허용 방식을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10년 간 약 3만 8천 명 증가
-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의 파견근로자 비중은 일본 2.5%, 독일 3.0%
-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리산업 사업체 중 99.7%가 중소기업*이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파견허용을 강력히 요구
* 부리산업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보고서(20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파견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 허용을 통한 입적목적 및 일자리창출 달성
- 갑작스런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인력부족이 심한 산업 혹은 부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심으로 파견을 점진적으로 확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
선
방
안

현행	개정안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생략) ④ (생략) ⑤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등) ①~② (삭제) ③ 근로자파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5. (좌동) ④ (삭제) ⑤ _____ 제1항의 _____ 규정을 _____ _____

- 파견을 전면 허용하여 파견근로자의 비중이 독일 수준인 3%에 도달할 경우(현재는 1%) 37만 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 단기간으로 부리산업**에 먼저 파견근로 허용 시 환경연보고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대 1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
** 부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부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2015)

2. 통상임금 범위의 명확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환경노동위원회/근로기준법

현황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 누적으로 노사 간 이견이 확대되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했으나 여전히 노사 간 대립 지속
 - 노동부도 지도지침을 내놓았으나 분쟁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평가

- 통상임금 기준이 모호하거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분적으로 반하는 판결이 다수 존재해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많은 소송 발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최소근무일조건 또는 재직조건 부가 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 아닌 것으로 판단
 - 정기상여금의 경우 재직조건 등 부가 시 고정성 결여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
- 신의칙 요건 및 고정성 해석을 두고 노사 간 갈등 확대
 -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거 3년치 임금에 대한 소급청구는 신의칙 법리에 의해 제한되지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기준은 노사 간 견해 차이가 클 수밖에 없음

개선방안

-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들이 끊이지 않아 1개월의 기간 제한 또는 네거티브 방식 등의 명확한 입법 필요

<근로기준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신설)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다.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은 제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6조1의 법과 이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기법 시행령	(예시) ① 근로자의 건강, 노후생활 보장, 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 ② 근로자 업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지 아니한 임금 ③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통상임금 입법 시 기업단위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유효하다는 규정도 마련해 노사자율적 의견을 우선 인정하는 방안도 필요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개정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환경노동위원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법률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기존 근로자 해직 후 신규채용하고 있는 상황(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률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후에도 기간제 해당 근로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법 효과에 대한 의문점 제기 ○ 해당 법안이 시행 이후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수준과 처우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연보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수준은 2007년 정규직 대비 76%에서 2009년 66% 수준으로 낮아졌고 고용 역시 계약기간 갱신이 불가능한 근로자 비중이 2007년 42%에서 2009 53%로 증가 *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2015) ○ 2년 기간이 지난 근로자는 계약 만료 후 다른 사업장을 찾고 사업장에서도 재고용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가 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불경기가 맞물려 정규직 전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정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늘리는 차선택 모색 필요 <p><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_____ 4년을 _____ _____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국가 등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을 일정기간 동안 면제해주는 제도 설계 고려 	현행	개정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_____ 4년을 _____ _____
현행	개정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_____ 4년을 _____ _____				

4. 경영상해고 요건 명확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환경노동위원회/근로기준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해고요건은 1997년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후,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내용으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자 선정 3)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 여기에 해고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 재고용 노력 및 정부지원 방안 등 대책마련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경영상해고와 관련한 최근 논의방향은 정리해고에 관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구조에서 경영상 해고조건이 강화된다면 기업회생이 더욱 힘들어져 노사 모두에게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요건들이 강화될 경우 해고경직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직적 노동시장을 보유한 국가이며 OECD국가 중에서는 가장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평가 ○ 현행 대법원 판례에서는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경우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완화해 인정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 해고 요건을 유지 또는 완화해 기존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것을 막고, 절차상 문제는 판례 축적과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해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해고회피 노력의 구체적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경영상 해고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인원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복합적 판단을 통해 각 기업이 결정해야 할 사안 <p><근로기준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td> <td style="padding: 5px;">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를 포함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를 포함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를 포함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환경노동위원회/근로기준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쉬운해고 조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 명확화는 쉬운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불확실성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를 혼용해 판결하는 사례가 많아 노사 양측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과자 해고 관련 노동위원회 심결례 및 판례를 보면, 저성과 상태에 대한 기준과 해석이 매우 엄격하며, 저성과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 근로자의 개선가능성 등이 중요한 요소 - 저성과와 동시에 다른 징계사유가 혼재되어 이를 징계해고로 보는 경우가 많아 저성과만을 가지고 해고한 건의 정당성을 인정할 경우는 거의 없음 -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움에도 '통상해고' 영역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적고,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를 혼용하여 판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과자 해고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쉬운해고가 아니며 인사관리의 합리화 및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과자 해고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엄격하게 인정됨 <p><근로기준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현행</th> <th style="width: 50%;">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24조의2(신설) ①~④ (신설)</td> <td> 제24조의2(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자가 저성과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저성과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저성과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저성과자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해고 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신설) ①~④ (신설)	제24조의2(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자가 저성과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저성과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저성과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저성과자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해고 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신설) ①~④ (신설)	제24조의2(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자가 저성과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저성과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저성과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저성과자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해고 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6.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환경노동위원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현
황

- 한국은 법으로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를 금지
 -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도급도 금지해 노사 간 협상력 불균형 초래

평
가

- 쟁의권에 비해 사용자 조업 자유 및 재산권 행사 제한
- 노사 간 협상 결렬 시 사용자 대응수단의 부재로 파업 증가 유발
 - 파업으로 심각한 생산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무리한 요구가 관철되는 상황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대체근로를 인정하는 반면 한국의 대체근로 금지 규정은 시대상황과 세계기준에 불합치
 - 해당법을 제정할 당시 노사 간 상황과는 크게 변화했음을 인지
 - 미국은 일시적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
 - 주요선진국에서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혹은 일부 인정하는 추세

개
선
방
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3조 삭제로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3조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43조 ① (삭제)

- 법안 삭제가 어려울 경우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연차파업 혹은 정치적목적의 쟁의행위 등의 경우 대체근로 허용 명확화

- 환경연보고서*에 따르면 대체근로 허용 시 취업자 20만 명 증가

- 연구결과, 대체근로 도입 시 파업기간은 평균 34.3% 감소

*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2015)

7.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면제제도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환경노동위원회/근로기준법

현
황

- 현 근로기준법은 제조업종의 블루칼라 근로자에 맞춰진 경우가 많음
 - 관리자 및 전문직군에서 근로시간의 시점과 종점 구분이 모호하고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계산이 어려움
- 화이트칼라이그젬션(이하 면제제도)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자는 것

평
가

- 근기법 제63조에 의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대상 규정에 대한 면제대상을 규정
 - 대상은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음
-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가 모호해 노사 간 갈등의 여지가 존재
 -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의 경우 해당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

개
선
방
안

- 일정 임금수준 이상 근로자들이 초과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초과근로 유인이 약해져 장시간근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면제제도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근로 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 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시행령으로 정한 대상에 한해서 가산임금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근기법 시행령	① 관리직, 사무직 및 전문직 근로자 중 임금소득 상위 25%에 속하는 근로자(예시)

8.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환경노동위원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 황	<p>○ 2016년부터 300인 이상, 2017년부터는 전 기업을 대상으로 60세 정년 의무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p> <p>- 늘어남 정년에 맞춰 임금피크제도입 및 임금체계개편 등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조항에 막혀 노사 간 합의점 도출 난항</p>													
평 가	<p>○ 정년 연령은 법으로 명시한 반면,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피크제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은 법으로 명시하지 않아 이미 많은 소송 발생</p> <p>- 노조나 노사협의체에서 임금체계개편 거부 시 조정방안 부재</p>													
개 선 방 안	<p>○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 의무화를 법으로 명시</p> <p>〈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td> <td>제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td> </tr> <tr> <td>① 제19조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td> <td>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개편을 하여야 한다.</td> </tr> <tr> <td>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td> <td>② _____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장의 사업주 _____</td> </tr> <tr> <td>③ (생략)</td> <td>③ (좌동)</td> </tr> <tr> <td>④ (신설)</td> <td>④ 제1항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td> </tr> </tbody> </table> <p>○ 환경연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연장 시 5년간 107조 원 추가비용 부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임금피크제 도입 시 26조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p> <p>- 절감되는 금액은 29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 5년간 31만을 고용 가능 규모</p> <p>*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2015)</p>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개편을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_____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장의 사업주 _____	③ (생략)	③ (좌동)	④ (신설)	④ 제1항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개편을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_____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장의 사업주 _____													
③ (생략)	③ (좌동)													
④ (신설)	④ 제1항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장소 명확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환경노동위원회/노동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경우 노동법에서 직장점거파업의 허용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의행위는 생산이나 그 밖의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기준이 매우 넓어 거의 매번 점거파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점거 금지 이유는 노동조합이 주장 관철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즉 직장점거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간접적으로 파업 중에도 생산이나 그 밖의 주요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에도 상대적으로 사용자 시설관리권 침해에 관한 고려는 부족한 현실임 ○ 사업장 내의 운동장, 정원, 대체수단이 있는 통로, 강당 등의 장소에서 쟁의행위가 가능해 사실상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 ○ 현실상 사용자 측에서 직장점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인 직장폐쇄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적법성을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 역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측이 직장점거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은 직장폐쇄로 볼 수 있음 - 직장폐쇄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적법성이 판가를 나는 데 적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올 경우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음 ○ 위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노동법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영업권 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법체계 하에서는 지속적인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협약에 의해 사전에 명시된 장소 외에서 행해지는 쟁의행위를 금지

10.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할증 기준 완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환경노동위원회/근로시간법

연 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최대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안이 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으로 제한 - 장시간 근로 관행의 노·사·정 동의로 빠른 진행 예상 ○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초과근로시간을 줄인다는 목적하에 휴일근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 개정 검토 중(근로기준법 제56조)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할증률은 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경우 25%이며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유럽의 경우도 대부분 25% 수준이며 직종별로 차등 적용 ○ 한겨레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12조 3천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이 중 70%인 8조 6천억 원이 중소기업 부담 분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2015) ○ 인력수급 및 기업 경영상황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 추진으로 부작용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단축은 이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난 가중 ○ 중복할증 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부담 가중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근로와 휴일근로할증 중복으로 생산성과 관계없는 추가비용 발생 -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라 훨씬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우려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 휴일근로의 구분 삭제, 모두 연장근로로 통합, 법정분쟁 소지와 중소기업 중복할증 부담 완화 <p>〈근로시간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td> <td style="padding: 5px;">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td> </tr> <tr> <td style="padding: 5px;">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td> <td style="padding: 5px;">① _____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_____.</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_____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_____.
현행	개정안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_____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_____.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 과제



04

성장견인을 위한 세제개혁

1. 법인세율 인하
2. R&D 세제지원 강화
3.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도입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5.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6. 소득세제 개혁
7. 상속·증여세제 개혁
8. 일감몰아주기과세 개선
9.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10. 재정준칙 강화
11.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1. 법인세율 인하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기획재정위원회/법인세법

현
황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와 과표구간 확대
 - 2008년 세법개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0년부터 22%(2009년) → 20%로 2%p 인하하는 것이었으나, 2009년 세법개정 시 2년간 유보
 - 2011년 세법개정은 2012년부터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 → 3단계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22%로 당초 2%p 인하를 철회하며 현행대로 유지

평
가

-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
 -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2년 기준 3.7%로 OECD 34개국 중 6위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세계적 추세며, 법인세의 재분배 효과 부재와 법인세 부담의 전가·귀착이 불분명해 대부분 국가들은 단일 세율체계 적용
 -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평균으로 1998년 34.6%에서 2014년 2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 OECD 국가 중 21개국이 단일세율, 10개국이 2단계 누진세율, 3개국(우리나라 포함)이 3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 적용

- 법인세 최고세율 2%p 인하와 이에 따라 세율구간을 2단계로 축소

〈법인세법 개정안〉

개
선
방
안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① (생략)		제55조(세율) ① (좌동)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천만 원+(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 원 초과	2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 원 초과	39억 8천만 원+(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법인세율 2%p 인하 시 향후 5년간 고용 302,070명 증가 예상
 - 또한, 향후 5년간 GDP 245,895억 원, 투자 62,970억 원 증가

2. R&D 세제지원 강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기획재정위원회/조세특례제한법

○ 현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정책으로 R&D 세제지원 축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R&D 준비금 손금산입	○		×	
R&D 비용 세액공제	3~6%	3~4%	2~3%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10%	3·5·10%		1·3·6%

○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국은 R&D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 미국: R&D 세액공제 영구화, 공제율 14% → 20%(2015.05. 하원 통과)
- 영국: 2013년 특허박스 세제 도입,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 실현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20% → 10%로 축소
- 중국: R&D 설비투자 및 교체를 위해 고정자산 가속상각 추진

○ 경제활성화를 위해 R&D 세제지원 강화(2015년 → 2013년 수준)

- R&D 준비금 손금산입, R&D 비용 세액공제(대기업의 당기분 방식) 3~6%,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10% 적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

○ 이 같은 R&D 세제지원 시 향후 5년간 고용 23,040명 증가 예상

- 또한, 향후 5년간 GDP 12,630억 원, 투자 2,985억 원 증가
- R&D 세제지원 1,544억 원 가정

(단위: 억 원)

	2013년(실적)	2015년(추정)	증감
R&D 준비금 손금산입	830	종료	-830
R&D 비용 세액공제	28,850	28,188	-662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1,600	1,548	-52

자료: 2015,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3. 중소기업 특허박스 세제 도입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기획재정위원회/조세특례제한법

현황

- 우리나라의 현행 R&D 관련 세제지원은 손금, 세액공제·감면 등을 활용
 - 이 같은 '소극적' 방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지식재산에 대해 우대하는 '적극적' 방안으로 전환 필요

평가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매우 낮아 적극적 세제지원 필요
 - 2014년 기업 전체에서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77.5%, 중소기업은 11.9%, 벤처기업은 10.6%
- 세계 각국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며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일괄적 세율 인하 등 세부담을 경감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세제 도입·시행

<Patent Box 세제의 해외 사례>

국가명	법인세율 (최고)	Patent Box 적용 세율	비과세 기준	적격 IP 유형	매입 경우	지식재산 처분 소득
프랑스 (2005)	34.4%	15%	Flat Rate	특허 및 그에 준하는 지식재산 (SPC)	2년 이상 보유	적용
네덜란드 (2007)	25%	10%	Flat Rate	특허 및 적격 인증 R&D	매입 후 추가 개발 필요	적용
스페인 (2008)	30%	15%	Patent Income의 50% 비과세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매입 후 추가 개발 필요	적용 제외
영국 (2013)	24%	10%	-	특허	제외	적용
중국 (2008)	25%	12.5%	5백만 RMB까지 : 비과세	특허 및 영업 비밀	일괄 적용	적용
			5백만 RMB : 50% 비과세			

자료: 한국경제연구원(2013.12)

- 향후 성장에 큰 기여가 기대되고 세수 손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하면 중소기업을 적용대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

개선방안

- 중소기업에 한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그 수입금액의 50%를 비과세한 후, 10% 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상법 개정안
<신설>	제5조의4(중소기업 특허 등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대상: 중소기업 ○ 적용 세율: 10% ○ 비과세 기준: 수입의 50% ○ 적용 범위: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일반 지식재산권 수입 ○ 적격 IP 유형: 특허 + 실용신안 + 소프트웨어 + 승인받은 영업비밀 ○ 수입 범위: 라이선싱 수입, 처분수익, 직접 생산된 제품/서비스매출 수입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기획재정위원회/조세특례제한법

현황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2011년 도입 후 투자와 고용 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기본공제를 인하와 추가공제를 인상
 - (고용유지 시) 기본공제율: 1~4%('14년) → 0~3%('15년)
 - (고용증가 시) 추가공제율: 3%('14년) → 4~6%('15년)

평가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도입 이후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
 - 전체 종업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수혜대상인 설비투자 기업의 종업원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종업원수(만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268	277	289	304	327	343
설비투자 기업	226	230	243	249	242	240

- 우리나라 노동수요는 임금효과에 비해 산출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임금보조 방식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보다 (舊)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통한 생산증가가 고용창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 환경연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수요는 자기임금탄력성이 -0.076%, 대체탄력성이 0.191%, 산출탄력성이 0.556%로 추정
 - *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2012)

개선방안

- (舊)임시투자 세액공제로의 전환(2015년 → 2010년 수준)
 - 고용유지·증가 조건 없이 3·10%(수도권 내·밖) 투자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생략)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이 같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개선 시 향후 5년간 고용 57,600명 증가
 - 또한, 향후 5년간 GDP 46,800억 원, 투자 11,935억 원 증가
 - 투자지원액 8,762억 원 증가 가정(2012,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
 - * 2010년(실적) 임시투자 세액공제액: 17,700억 원
 - ** 2015년(추정)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 8,938억 원

5.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기획재정위원회/법인세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2016년부터 대기업에 한해 연간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에 미공제 이월결손금은 현행 공제기간 10년 내 공제 가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거나 소득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으로 공제기간 내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결손금이 미공제 ○ 기업규모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결손 발생은 기업경영에 부정적으로 작용 ○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제한이 없거나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과세소득 1백만 유로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한도 50%가 설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월결손금은 기한 상관없이 공제 가능 - 독일: 100만 유로 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 60%가 설정되어 있으나, 공제기간은 따로 제한하지 않음. - 영국: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제기간은 제한 없음. - 미국: 공제기간은 2년의 단기 소급기간과 20년의 장기 이월기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설정된 점을 감안하여 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 <p><법인세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13조(과세표준)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td> <td style="padding: 5px;">제13조(과세표준)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td> <td style="padding: 5px;">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3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td> </tr> <tr> <td style="padding: 5px;">2~3. (생략)</td> <td style="padding: 5px;">2~3. (좌 동)</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13조(과세표준)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3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2~3. (생략)	2~3. (좌 동)
현행	개정안								
제13조(과세표준)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3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2~3. (생략)	2~3. (좌 동)								

6. 소득세제 개혁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기획재정위원회/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과표구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세법개정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0년부터 35%(2008년) → 33%로 2%p 인하하는 것이었으나, 2009년 세법개정 시 2년간 유보 - 2011년 세법개정은 2012년부터 소득세 과표구간을 4단계 → 5단계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오히려 3%p 인상 ○ 2013년 세법개정은 2014년부터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라는 목적에서 소득 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간접적으로 고소득층에 세부담 집중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세원 감소로 세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2013년 기간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 최고세율은 59.13% → 41.80% 감소,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05% → 3.73% 증가 ○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로 인해 세부담의 누진도는 더욱 상승해 소득재분배 기능은 오히려 더욱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상관관계는 역U자 - 지나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면세점이 매우 높고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세부담의 누진도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 - 현행 소득세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태(성명재, 2011.05)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가 우선이 아니라, '국민개세주의'에서 전 소득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를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공제상 차별을 해소하고 면세점을 인하여 나가며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회복 ○ 소득세율 인하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의 세수중립적 전환 등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도입 당시 그대로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 - 조세의 효율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는 세수증대수단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보다 더 나은 평가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이며 미미한 재분배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김승래·김형준·이철인, 2008.12)

7. 상속·증여세제 개혁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기획재정위원회/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는 5단계의 과표구간으로 10~50%의 세율 적용**
 - 기업상속재산은 200억 원(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500억 원) 한도로 공제
 - 창업자금·가업승계증여는 5억 원 공제 후 특례세율 적용

공제금액과 세율		공제한도
창업자금 증여	5억 원 공제 후 세율 10%로 증여세 부과	증여세 과세 가액 30억 원 한도
가업승계 증여	5억 원 공제 후 세율 10%(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로 증여세 부과	증여세 과세 가액 100억 원 한도

-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소득세가 부과된 자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로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세율에 비해 낮은 수준의 상속세율 적용
 - 국제적 추세는 상속세가 점차 축소 또는 폐지
 • 캐나다(1972), 호주(1977), 뉴질랜드(1992), 포르투갈(2004), 슬로바키아(2004), 스웨덴(2005) 등은 상속세 폐지
-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매출액 5,000억 원 이하 기업으로 제한돼 있어 기업의 인위적 분할과 성장 기피 등 부작용 초래**
 - 우리나라와 대조적으로 독일과 영국은 적용대상에 기업규모 무제한
-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존속은 근본적으로 가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
 - 2013년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 가업승계 시 세제지원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주된 어려움이라고 답한 기업은 71.7%
- **조세 총수입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013년 기준 1.7%)이 매우 작은 데 반해, 가업승계 세제지원은 조세 복잡성을 야기하며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비용 상승 초래**

- **중단기적으로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
 -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보장하여 기업의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상속공제의 적용에 있어 기업규모에 제한 없이 전체 기업으로 확대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존속 하에 세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상속 및 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조세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급격한 폐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축소·폐지
 • 동시에 상속·증여재산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

8. 일감몰아주기과세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기획재정위원회/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 황	<p>○ 2011.12.31. 신설되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일감몰아주기과세는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해 증여세 부과</p> <p>-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정상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 한계 보유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거래비율: 30%(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50%) • 한계보유비율: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10%) 				
평 가	<p>○ 기업규모에 따른 과세상 차별</p> <p>-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경우는 당초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 세하려는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p> <p>○ 거래구조 또는 지배구조에 따른 과세상 차별</p> <p>-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국내법인이 수출 목적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하지만, 다른 국내법인에 판매한 후 수출하는 경우는 실제 거래가 동일하더라도 포함</p> <p>- 최대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법인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과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동일하게 처리</p> <p>- 지배주주의 실제 지배력은 동일하지만 자본 구성의 차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과세의 정도 가 달라지는 문제 발생</p> <p>○ 영업이익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영업손실의 경우 세금 환급이 없는 등 기업의 실상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 발생</p>				
개 선 방 안	<p>○ 일감몰아주기과세 폐지</p> <p>- 일감몰아주기과세 관련 지적되는 수많은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증여가 아닌 내용을 증여 로 '의제'하는 것에 기인</p> <p>- 법조항을 개정해 모두 반영하는 것은 해당 법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동일</p> <p><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 익의 증여 의제) (생략)</td> <td style="padding: 5px;">제45조의3 삭제</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 익의 증여 의제) (생략)	제45조의3 삭제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 익의 증여 의제) (생략)	제45조의3 삭제				

9.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기획재정위원회/조세특례제한법

현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부터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증대세제: 근로자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에 대해 공제율 10·10·5%(중소·중견·대기업)로 세액공제 - 배당소득 증대세제: 고배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인하(14 → 9%),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 때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 - 기업소득 환류세제: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투자·임금증가·배당액이 미달한 금액(기준미달액)에 대해 세율 10%로 추가과세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증대세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기업의 임금증가 유인이 부족 - 임금증가 시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과 내수진작 효과 미약 ○ 배당소득 증대세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소득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높아 동결효과 등 자본소득 원천 간 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어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은 긍정적 ○ 기업소득 환류세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유보금 증가는 생산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증가에 사용 -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 위축과 내수부진 초래 - 이중과세, 업종 상관없는 기준율, 해외투자 공제 제한 등의 문제가 존재 										
개 선 방 안	<p>○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적용기한 종료 후 폐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적용기한 연장,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적용기한 종료 후 폐지</p> <p><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생략)</td> <td>제29조의4 삭제</td> </tr> <tr> <td>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100분의 9로 한다. ②~⑤ (생략)</td> <td>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100분의 9로 한다. ②~⑤ (생략)</td> </tr> </tbody> </table> <p><법인세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현행</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생략)</td> <td>제56조 삭제</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생략)	제29조의4 삭제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100분의 9로 한다. ②~⑤ (생략)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100분의 9로 한다. ②~⑤ (생략)	현행	개정안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생략)	제5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생략)	제29조의4 삭제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100분의 9로 한다. ②~⑤ (생략)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 100분의 9로 한다. ②~⑤ (생략)										
현행	개정안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생략)	제56조 삭제										

10. 재정준칙 강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기획재정위원회/국가재정법

- 현황**
- 재정준칙으로 Pay-go 제도와 국가채무준칙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 계류
 - Pay-go 제도 신설 관련 이만우의원안(2012.10.30.)
 - 정부(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 시 (발의 또는 제안 시), 해당 의무지출의 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분만큼 다른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률안의 동반 제출(발의 또는 제안)의 무 규정
 - 국가채무준칙 신설 관련 김춘진의원안(2013.09.03.)
 -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국가채무의 한도액("국가채무총량")을 정하도록 규정

- 평가**
- 우리나라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총지출 규모 관리와 Pay-go 원칙의 실효성 제고 이외에 다른 방안은 부재
 - 총지출 규모 관리 방안은 재정건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또한 재정수지 또는 국가채무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인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음
 - Pay-go 제도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는 예산과 법률이 구분되어 있어 법률로서 예산을 완전히 통제하기 쉽지 않고, 또한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재정권한 및 입법활동을 제약하는 가능성 존재
 -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및 구속력을 지닌 재정준칙과 함께 탄력적 재정운용을 위해 경기조정 또는 구조적 지표를 이용하는 재정준칙 적용

국가	재정운용 목표	법적 기반	주요 내용
독일	채무비율	헌법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균형이어야 하며, 신규 채무가 GDP 대비 0.35% 이내여야 함
미국	PAYGO 채무한도	법률	의무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신규 입법 시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다른 의무지출 감소나 세입 증가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 되도록 의무화함 법률에 의해 채무한도를 매년 통제
영국	채무비율 재정수지	법률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을 전년도보다 감축해야 함 2017~2018회계연도 이내에 경기조정 재정수지 균형 달성

자료: 김정미·이강구(2013.09)

- 개선방안**
- 향후 법적 근거와 구속력을 지닌 구조적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 도입
 -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
 - 경기대응성 확보와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인 재정준칙 마련 필요

11.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소관 위원회/관련 법률: 안전행정위원회/지방세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1.1.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은 법인세(국세)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가 공유하지만,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관련 사항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 226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세무조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과세표준에 대해 중복 세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조사부터 불복까지 경제적·시간적으로 높은 납세협력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수차례 세무조사 가능 -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 사항과 세무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 세액 확정이 어려워 세무행정비용 증가 ○ 국외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같은 과세표준에 대해 지방정부 세무조사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중앙정부의 법인세(국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에 따라, 지방정부는 세무조사 없이 법인사업세 소득할(지방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과 주정부 간 조세 협정에 의해 연방정부 국세청이 주정부 법인소득세의 징수 및 세무조사를 포함한 행정에 대해 운영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결정·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감면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로 세액 경정 - 지방자치단체에게 세무서·지방국세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도록 하는 청구권 부여 <p><지방세법 개정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현행</th> <th style="width: 50%;">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④ (생략) ⑤ (신설) </td> <td>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과세표준 이외의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적용, 사업장 간 안분 등으로 인해 세액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액을 경정한다. ②~④ (좌동) ⑤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에 대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이 없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④ (생략) ⑤ (신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과세표준 이외의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적용, 사업장 간 안분 등으로 인해 세액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액을 경정한다. ②~④ (좌동) ⑤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에 대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이 없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④ (생략) ⑤ (신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과세표준 이외의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적용, 사업장 간 안분 등으로 인해 세액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액을 경정한다. ②~④ (좌동) ⑤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에 대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이 없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혁수, “한국관광산업 규제개혁 및 발전방안: 산악관광 사업성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자료집(2016.1.26.)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2015
- 박문수·고대영,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KERI Insight, 2015
- 변양규, 우광호,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2015
- 변양규 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KERI 정책연구, 2012
- 양금승,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KERI 정책연구, 2015
- 우광호,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2015a
- 우광호,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KERI Insight. 한국경제연구원, 2015b
- 유진성,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2015
- 전경련, 「대형마트 영업규제 3년의 효과와 바람직한 대안은?」, 2015.9.
- 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200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관리서비스 및 u-Healthcare 시장 규모 추계」, Issue Report, 2009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 과제

경제재도약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과제

발행일 | 2016년 8월 29일
지은이 | 이태규 외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주소 |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 02-3771-0001(대표), 3771-0060(직통)
팩스 | 02-785-0270
홈페이지 | www.keri.org
I S B N | 978-89-8031-775-2 93320

비매품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6021125)

*제작대행: (주)FKI미디어(02-3771-0247)